

2020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정기 회원총회

일시: 2020년 2월 29일 ~ 3월 8일

장소: 온라인

행성인 비전, 가치, 미션

행성인 20주년에 맞추어 단체가 지향하는 방향과 가치, 활동 내용 및 방식을 표현하는 비전, 가치, 미션이 제정되었습니다. 행성인의 비전과 가치, 미션은 지난 20년간 행성인의 활동 방향을 담아내며,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이를 외부에 공식적으로 드러내며 행성인이라는 단체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행성인의 비전과 가치, 미션은 2017년 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비전

‘행동하는 성소수자의 저항과 연대로 만드는 변화’

가치

저항하고 행동하는 행성인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는 행성인

평등한 공동체를 일구는 행성인

미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성소수자들이 존엄과 권리를 위해 함께 소통하고 저항과 연대를 일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 제도와 문화, 우리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활동합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누구나 행성인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소수자들이 저항하고 투쟁해 우리 자신과 세계를 변화시킨 역사를 기억합니다. 성소수자의 삶이 들리고 보일 때, 일상의 차별을 드러내고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소수자들이 가정, 학교, 직장을 비롯해 삶의 공간 곳곳에서 겪는 배제와 모욕, 차별을 감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스스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약속

평등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를 만들기 위한 시작!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하 행성인)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고 부딪히는 곳이기때문에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기도 합니다. 원치 않게 정체성이 밝혀져 곤란한 경우가 생기거나, 소수자 비하적인 욕설을 듣게 된다거나,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반말로 훈계를 듣게 된다거나, 특정한 정체성에 대한 무시와 조롱을 한다거나, 원치않는 스킨십을 강요당하는 일들이 행성인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변화들을 만들기 위해 행성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해보았습니다.

“평등한 행성인을 만들기 위한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사무실에 부착해놓고, 행성인의 공식적인 행사 시작 전에는 이 약속들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성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불편한 일이 생겼으나, 직접 해결하기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담당자를 정하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인권운동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주장하기 위해 행성인을 찾아 다양한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생각이 바뀔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소수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평등한 관계에서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면 좋겠지만 갈등과 부딪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약속은 토론을 통해 언제나 변경 가능합니다.

-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 모임을 갖도록 노력합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 청소년, 채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모임 공간에 신경을 씁시다)
- 처음 보는 사이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고, 말을 놓을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먼저 물어보고 정합시다.
- 내가 누구인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상대방의 정체성을 존중합니다.
(성별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의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을 존중합니다)
- OO다워야 하는 건 이제 그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 정체성을 어디까지 공개해도 괜찮은지 묻고, 원치 않은 공개를 피합니다.
- 소수자(여성/장애/질병/나이/인종)비하적인 언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원치 않는 신체접촉과 성희롱을 하지 맙시다.
- 모임에 새로 온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어울립니다.
- 불편한 것을 표현하는 건 분위기를 망치는 일이 아닙니다.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때 그때 표현하고 신뢰 속에서 함께 소통하며 해결합니다. 이를 위해 불편한 것에 대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만듭니다.

온라인 정기 회원총회 안내

코로나19 확산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행성인은 2월 29일(토) 오후 2시로 예정되었던 2020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정기 회원총회를 온라인 총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시일을 미뤄서라도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하면서 한 해의 활동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지만, 상황이 회복되기를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현실적인 안을 찾고 추후 소통과 보완의 과정을 모색 하자는 판단에 뜻이 모였습니다.

본 자료집은 향후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 및 보완됩니다.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견을 남겨 주시면 논의에 참고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추가 논의와 토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회복되는 대로 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총회에 제출한 의결을 바탕으로 토론할 수 있는 회원 모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온라인 정기 회원총회 타임라인

2월 25일	온라인 총회로 대체 공지
2월 29일 ~ 3월 8일	의견서 제출 기간 -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 대상
3월 16일	제출된 의견 정리하여 회람 -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 대상
3월 27일	최종 총회 자료집 회람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료 순서

보고 안건

1. 2019년 연대활동 보고 및 평가		P. 9
2. 2019년 결산 및 감사 보고		P. 17
3. 운영내규 개정 보고		P. 101
4. 2020년 소모임 등록 현황 보고		P. 107

의결 안건

1. 2020년 임원 인준의 건		P. 25
2. 2020년 활동 목표 의결의 건		P. 35
3. 2020년 활동 계획 의결의 건		P. 41
3. 1. 조직 개편		P. 42
3. 2. 교육기획국		P. 45
3. 3. 성평등위원회		P. 50
3. 4. 활동팀		P. 55
3. 5. 사무국 및 기타 사업		P. 68
4. 2020년 예산 의결의 건		P. 75
5. 정관 개정 의결의 건		P. 83
6. 조정위원회 운영내규 개정 의결의 건		P. 87
7. 성폭력사건처리규약 개정 의결의 건		P. 93

기타 안건		P. 109
-------	-------	--------

부록 - 현 행성인 정관 및 내규 (2019.02.23 개정)		P. 111
------------------------------------	-------	--------

보고 안건 1

2019년 연대활동 보고 및 평가

보고 1. 2019년 연대활동 보고 및 평가

1)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담당: 웅)

인권운동더하기는 2019 년 인권활동가대회, 반성폭력 후속 워크숍 '우리는 왜 항상 미끄러질까', 한국인권보고대회 등 정기적인 사업 기획 및 수행했다.

더불어 인권재단사람의 제안으로 지속 가능한 인권활동을 위한 활동가 실태조사를 공동 진행했다. 인권활동가들의 처우와 운동 환경을 살피는 작업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워크숍과 2020 인권활동가대회를 준비했다. 올해에는 이를 바탕으로 활동가 교육을 준비 중이다.

인권운동더하기 운영회의는 촉진 단체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지난해는 나야 장애인교육센터,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QUV 와 더불어 행성인이 촉진 단체로 참여했다.

인권운동연대체인만큼 인권운동더하기는 연례 활동 외에도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이 많이 들어온다. 그것이 '인권'의 자리를 형식적으로 채우는 것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의제들을 인권의 관점으로 다시 읽고 인권의 언어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상이한 단체와 활동들의 연석회의라는 특성상 인권운동더하기는 인권운동의 대표성과 촉진자의 역할을 모두 가지고 있다.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기는 어렵겠지만, 인권운동 더하기 또한 활동을 가볍게 가져가되 만남의 장을 수시로 만들어 인권의 언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2)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담당: 오소리)

(1) 2019년 평가

① 무지개행동 주관 활동

- 제 11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여기, 축제”
- 2019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대행진

- 2019 활동가를 위한 반성폭력 교육
- 계절포럼: 알록달록다락방
- ILGA ASIA 2019 컨퍼런스
- 제 3회 무지개행동 활동가대회
- UN 심의 참여: 자유권규약 이행점검 정부 간담회 참석, 아동권리협약 시민사회 보고서 제출)
- 구금시설과 성소수자/HIV감염인 인권 토론회
- 2019년 설날, 추석 현수막 게시
- 성적지향 삭제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규탄 행동

② 평가

연초에 총회를 통해 기획하고 준비한 활동을 소기의 목적에 맞게 잘 이행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논의나 전략에 대한 무지개행동 단위 내 깊은 논의, 대응 등에 대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어렵기도 했다. 무행 집행위 소속 단체가 아닌 단체들의 고민을 나누고 논의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지역 운동 및 부문별 운동의 고민 등에 대해 무지개행동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역할은 무엇일지, 무지개행동은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연대체인지 대표성을 가져가는 연대체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2019년에는 일가아시아 등 굵직한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어 나가며 총선과도 연관 지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2) 2020년 활동 계획

① 2020년 무지개행동 주요 활동 기조: 성소수자 시민권 도약의 해

② 2020년 무지개행동의 주요 과제

-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성소수자 운동의 주요 접점 찾기: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제정의 의미를 포럼과 TF 활동으로 교육 및 구체화
- 문재인 정부 내에서 실질적인 성소수자 인권정책 수립 마련을 위한 기초작업
- 무지개행동 소속 단체들의 지속적인 연대와 의제 및 담론 논의
- 혐오와 차별을 현실을 알리기 위한 지속적인 언론접촉, 대중행동, 현안 대응

3)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담당: 웅)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지난 몇 년 동안 에이즈예방법 19 조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 폐지에 집중하자고 결의했으며, 2019년에는 19 조 폐지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왔다. 그간 19 조 폐지 활동을 해왔지만 인권운동의 관점에서 이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요지였다. 에 네트워크는 내부 워크숍 등을 통해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모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슈들을 전담하다시피 하는 연대운동의 특성상 담론이나 캠페인으로까지 연결시키지는 못했다. 편으로 네트워크는 대전시티즌, 수용시설 감염인 차별, 소방공무원 해고 등 사건대응을 했다. 여 올해는 에이즈 제도운동과 사건대응, 대중캠페인을 연결시켜야 하는 과제가 떠오른다.

그것은 네트워크의 방향을 다시금 재고하도록 한다. 비감염인과 감염인단체 사이 연대를 도모하고 공동의 목소리를 만들어내자는 초기 네트워크의 설립 취지는 잘 실천되고 있는가.

최근 19 조 위헌제청이 나오면서 네트워크는 대응을 준비 중이다. 적재적소의 대응을 하면서 U=U, 프렙, 노동권 등 그간의 의제들을 엮어낼 수 있다면 좋겠다.

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당: 지오)

(1) 2019년 평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체회의 평가

① 차별당하는 사람들의 말하기 공간을 열다

누구나 차별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말하기는 쉽지 않다. 자신을 드러내거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렵고, 말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이유로,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 많다. 차별잇수다는 이런 이유들을 딛고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열었다. 각자의 경험을 '차별'이라는 틀을 통해 해석해보고 공감과 지지를 얻고 다양한 대응 방법에 대한 고민까지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② 혐오, 규탄을 넘어 변화를 꾀하다

2019 년 차제연은 혐오를 지적하고 규탄하는 것을 넘어서 혐오에 대항하기 위한 구체적 제안을 만들려고 했다. 공감대, 무지개행동과 공동으로 제작한 혐오대항가이드북은 혐오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에 대항할 수 있는 개개인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삼았다. 2018 년 지방선거 대응에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체적 역할을 주문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특위에도 참여하여 리포트 작성 등 대응방안 마련에 기여하는 등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을 만들어왔다.

③ 제도권의 침묵, 정의당의 약속

20 대 국회와 정부에서 차별금지법 침묵 기조를 깨고 발의를 통해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들어보자던 목표는 사실상 이루지 못했다. 상반기 정의당과 차별금지법 발의를 추진하기 위해 소통하면서 법안 검토 및 의원 면담 등을 진행했으나 20 대 국회에서 의원입법발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확인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의당이 21 대 국회 1 호 발의 법안으로 공언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이 공식화되었다. 한편,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요 과제로 내세운 국가인권위원회마저 침묵에 동조했고 차제연 역시 인권위의 역할을 견인하고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④ 평등을 도모하는 운동을 틉우다

2019 년 차제연은 평등정책 TF 를 구성해, 소속단체들의 다양한 이슈를 '평등'이라는 주제어를 통해 연결하면서 더 평등한 세상을 위해 어떤 권리들에 도전해야 하는지 밝혀가기 시작했다. 또한 평등행진 조직위원회 구성으로 참여 폭을 넓혀, 불평등에 맞서는 세력을 모으고 '평등'의 내용을 채우고 전망을 확장해가려고 했다. 지역 반차별운동 네트워크 워크숍은 여러 지역에서 각자의 현안과 기획활동을 벌이는 운동들이 모여서 현황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⑤ 소속단체 참여 폭의 확대

공동대표단, 평등정책 TF, 평등행진 조직위 실행팀 등을 통해 기존 팀이나 집행위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 및 활동가들이 차제연과 함께 활동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

(2) 2020 년 활동 계획

재출범 이후 3 년이 지난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의 의의를 중심으로 제정 운동을 해 왔다면, 이제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확산시키고, 차별의 구조를 인식하면서 동시에 그 구조에 맞설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과정을 시작하고자 한다. 더불어 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지 각 운동(단체 및 개인)의 언어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모두에게 ‘있으면 좋은 법’이 아니라 ‘나/우리에게 필요한 법’이 되도록 하는 담론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2020 년에는 이러한 방향을 중심으로 계획을 논의중이다.

행성인에서는 상임활동가 1 명이 정책담론팀과 평등정책 TF 에 속해 있으며, 활동회원 1 명이 평등정책 TF 에서 함께 논의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차별금지법을 일상의 경험과 연결하여 행성인의 운동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회원들과 차별금지법을 보다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모색하고자 한다.

- 차별잇수다 사례 분석
- 21 대 총선대응 및 차별금지법안 쟁점 토론회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체회의 평가
- 반차별 활동가 캠프: 7 월 초
- 평등행진

5)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담당: 웅)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는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소수자 난민의 심사과정에서의 문제를 밝히는 사업은 성소수자 난민(심사) 지원 활동가 및 변호사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연구 인터뷰를 토대로 네트워크는 성소수자 난민 지원의 사례를 모으면서 심사과정 문제와 성소수자 난민이슈를 언어로 만드는 작업에 집중한다.

3 월경 사업이 마무리될 계획이다. 2020 년에는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캠페인을 계획 및 진행하고 성소수자 난민들과 교류를 지속하면서 지원 인프라를 맵핑하고자 한다.

6)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군성넷) (담당: 오소리)

(1) 2019년 활동평가

2019년에는 군성넷 담당 활동가들의 대거 교체로 인해 조직 안정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목표에 맞게 내부역량강화 워크숍, 일상사업 안착을 위한 내부점검 등을 진행했다. 한편, 대리인단과 소통하며 현재 계류중인 위헌법률심판 관련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조직안정화에 집중하다 보니 외화 되는 활동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2020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예상된다. 이에 맞춰 공개변론 전에 인권/시민사회단체를 조직하여 현재를 압박하는 것과 대중캠페인을 통해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에 대한 여론을 형성시키는 것이 주요과제로 떠올랐다.

(2) 2020년 활동계획

- 자필 탄원서 작성 프로그램 진행
- 인권/시민사회단체 간담회
- 21대 국회 대응
- 군성넷 + 대리인단 공동 프로젝트 추진 (논의중)

7)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담당: 호림)

(1) 2019년 활동평가

- 동거·동성 커플 차별 실태조사 및 조사 참여자 대상 보고회 진행
-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성혼/파트너십 권리를 위한 성소수자 집단 진정 제출 - 1,056명 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후속 작업으로 동거동성커플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전하는 “당신의 이야기” 시리즈를 소셜미디어에 게재 중. 오마이뉴스에 “왜 동성혼?”이라는 제목으로 연속 기고 중

- 2명의 행성인 담당자(지오/호림)가 가구넷에 참여하여, 활동기획 및 수행의 많은 몫을 담당하고 있음. 2017-18년 동안은 활동이 뜸했으나 2019년 실태조사와 국가인권위 진정을 기점으로 적극적인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캠페인 준비하고 있음.

(2) 2020년 활동계획

2020년 한 해 동안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의 본격화를 위한 기초작업 - 조직 체계화와 자원 발굴, 연구, 전국적인 교육프로그램 진행 등을 진행할 예정임. 가구넷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더 많은 자원과 역량을 투입하게 될 것임.

행성인 차원에서 동성혼 법제화 운동에 어느 정도의 단체 역량을 투입할 것인지, 동성혼 법제화와 관련한 논의와 활동을 행성인 내에서 어떻게 공유하고 진행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보고 안건 2

2019년 결산 및 감사 보고

보고 2. 1. 2019년 결산

1) 수입 결산

2019년 월별결산표

관	항	목	2019년 예산	집행률(%)	2019년 결산
이월금	이월금		12,998,412		12,998,412
후원수입	정기회비후원금	CMS	103,800,000	94	97,920,770
		입금	500,000	46	230,000
	후원금	비정기후원	7,000,000	71	4,985,845
		특별후원	0		1,200,000
사업수입	판매	책, 자료, 물품	5,000,000	178	8,914,500
	강연, 교육, 대관		1,500,000	16	243,000
	참가비	참가비	1,000,000	92	915,000
	특별사업	분담금, 인세 등	0		1,080,000
잡수입	이자수입	이자수익	10,000	66	6,568
	기타 수입	기타(일자리안정기금)	0		
		기타	0		
		임대료	0		
환급	환급	환급			52,500
		월 수입			
합 계			131,808,412		128,546,595

2) 수입 설명

- 2018 년 신규 CMS 가입자는 총 88 명, 일시정지를 포함한 해지자는 90 명이었음. 가입과 탈퇴가 비슷한 추이였으며, CMS 수입이 하락세는 아니었으나 증가도 없어 목표치에 도달하지는 못함.
- 내부 안정화에 역점을 두면서 별도 사업비 편성을 하지 않았기에 판매금과 쿼어퍼레이드 공동행진단 분담금 외 사업 수입이 없음
- 특별 후원은 8~9 월에 진행했던 교육장 TV 마련 후원 모금이었음.

3) 지출 결산

관	항	목	내역	2019년 예산	집행률 (%)	2019년 결산
운영비 78%	인건비	대표지원	대표지원비	2,250,000	100	2,250,000
		상근활동	기본급	42,800,000	102	43,736,000
		근속수당		590,000	102	600,000
		반상근		12,150,000	99	12,084,120
		복리후생비		3,240,000	100	3,240,000
			공익조합 동행	360,000	100	360,000
		상여금		2,750,000	100	2,750,000
		퇴직적립금		5,666,000	100	5,667,000
		퇴직금지출	중간정산			
		기본급 소급지원	인건비 상승분 소급	0		462,000
		직책수당	사무국장	900,000	100	900,000
		4대보험	단체부담총액	3,560,000	74	2,629,666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반기)			264,230
		인건비 소계		74,266,000	101	74,943,016
	관리비	임차료		22,560,000	100	22,560,000
		관리비		1,440,000	100	1,440,000
		정수기		550,800	93	509,800

		전기	전기 4,8 도시가스	1,320,000	94	1,246,210
		복합기임대		1,080,000	100	1,080,000
		통신비	전화 인터넷 호스팅	1,320,000	89	1,175,880
		관리비 소계		28,270,800	99	28,011,890
	사무비	발송	우편발송	100,000	28	27,820
		운반	짐운반	150,000	49	73,200
		출장	여비, 교통비	500,000	0	0
		홍보	메일링, 문자, 리플렛 등	800,000	97	774,800
		지급수수료		10,000	244	24,400
		사무비 소계		1,560,000	58	900,220
	물건비	비품비	비품, 수리	500,000	213	1,062,520
		소모품비		300,000	111	331,750
		자료구입비		100,000	20	20,000
		물건비 소계		900,000	157	1,414,270
	특별경비	특별경비				
	운영비 소계			104,996,800	100	105,269,396

관	항	목	내역	2019년 예산	집행률 (%)	2019년 결산
사업비 13%	팀별사업 및 운영회의	운영회의		800,000	75	600,450
		사무국		300,000	28	85,000
		회원사업국		600,000	38	229,470
		청소년팀		0		0
		노동권팀		600,000	18	106,050
		에이즈팀		600,000	51	305,120
		웹진팀		600,000	10	59,800
		성평등위원회		600,000	8	47,000
		소모임		0		0
		워크샵 및		600,000	59	355,460

		활동지원				
		조정위원회		800,000	97	776,100
		소계		5,500,000	47	2,564,450
	기획사업	소수자난민		0		0
		트랜스활동		600,000	29	171,700
		육우당추모		500,000	86	432,140
		축제-퍼레이드		1,500,000	77	1,153,300
		기념품 제작		0		900,000
		기타		500,000	0	0
		소계		3,100,000	86	2,657,140
	특별사업	서울 퀴어퍼레이드	공동행진단			1,514,000
		소계				1,514,000
	회원사업	디딤돌회원모 임		500,000	76	377,980
		지역회원모임		600,000	36	214,500
		총회송년회		2,000,000	72	1,441,490
		회원교육		1,000,000	10	100,000
		소계		4,100,000	52	2,133,970
		연대사업	활동비		500,000	73
	분담금			800,000	154	1,230,000
	후원			700,000	71	495,000
	소계		2,000,000	105	2,092,090	
	특별사업	비상체제아카 이빙		500,000	8	39,000
		사업비 소계		15,200,000	72	11,000,650
기타	예비비		611,612	24	144,740	
	적립금(8 총보증금, 시제)				170,000	
	환급		0		200,000	
이월금 9%			11,000,000	107	11,761,809	
운영비+사업비					116,270,046	
합계			131,808,412	98	128,546,595	

4) 지출 설명

(1) 운영비

① 인건비

- 상근 2명, 반상근 1명으로 3인 체제
- 상근 1,770,000 원 반상근 주 4일 135만원.
- 반상근 처우 개선 : 퇴직적립금 지급. 상여금 연 50만원 지급.

② 기타

- 출장비 항목의 교통비는 각각의 행사 지출비에 포함되어 별도의 교통비 지출 내역으로 포함되지 않았음.
- 교육장 TV 마련, 외장하드 교체 등으로 인해 비품비 지출이 예산보다 높았음

(2) 사업비

- 수입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재정 위기감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사업비 지출이 낮았음.
- 조정위원회 결산은 18년도에 이월된 청구번호 2018-7, 2018-8 건의 조사 및 집행을 위한 특별조정위원회의 진행비임
- 당초 기념품 제작 계획이 없었으나 서울퀴어퍼레이드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공동행진단을 구성하게 되면서 차별금지법 금형 배지를 제작함. 특별사업 지출 역시 퀴어퍼레이드 공동행진단 진행 비용임
- 19년에 회원사업 및 교육국을 신설하면서 교육 사업비 편성을 높게 책정했으나 교육보다는 캠페인단 구성 등 행사 기획에 맞춰짐에 따라 교육비 지출이 많지 않았음.

(3) 기타 지출

- 예비비 지출은 단체 차원의 조의금 및 회원 결혼식 화환 구입으로 지출한 내역임
- 적립금은 행사용 시재임
- 환급은 회비 과오납금 환불과 일자리안정기금을 4대 보험으로 공제하여 편성하는 것을 반영하기 전, 3월 달 일자리안정기금 입금 분을 부모모임에 환급한 내역임

보고 2. 2. 2019년 회계 감사 보고서

감사일: 2020년 2월 06일

감사인: 박예리

참석자: 지오

본 감사인은 행성인의 2019년 후원 수입 및 사업 수입 등 수입 전반, 운영비 및 사업비등 재정활동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수입금 입금내역, 결산서 및 지출내역 증빙을 실시하고 사업비 상세 내역과 정당성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수입: 수입의 대부분은 CMS 정기후원금, 비정기 후원금 등 후원 수입이었으며, 모든 내역은 적절하게 기록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수입의 비중이 낮고 전년대비 정기후원금의 증가가 미비하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 2) 비용: 결산서상 모든 항목이 누락 없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운영 비용은 모두 사용하였으나 사업비의 집행율이 저조합니다. 단, 총 지출액은 총 수입 금액을 넘지 않았습
니다.

행성인 회원들과 공유할 특이사항이나 자금 집행 절차상의 문제점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초계획 대비 사업비의 집행율이 낮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건전하고 안정적이지만 단체가 성장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활동가들의 활동뿐 아니라 회원들의 참여도는 얼마나 높아졌는지, 새롭게 시작된 사업과 모임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앞으로 기록될 장부의 내용이 그 해의 집중한 사업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온라인과 동영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완전히 변화하면서 오프라인 단체가 가지게 되는 위상도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모여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단체는 더 명확한 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행성인 회원들은 비전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02월 19일

감사 박예리

의결 안건 1

2020년 임원 인준의 건

의결 1. 1.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사무국장

● 운영위원: 남웅(운영위원장), 지오(사무국장), 박이경, 슈미, 오소리, 유경, 이호림, 조나단

● 남웅 (운영위원장)

- 활동 경력

2003 행성인 가입

2010- 행성인 HIV/AIDS 인권팀 활동

2013 행성인 HIV/AIDS 인권팀장

2013-2017, 2019 행성인 운영위원

2014- 행성인 상임활동

2018 행성인 비상대책위 활동

2015-2017, 2019 행성인 운영위원장

현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활동

운영위원장을 역임한지 햇수로 5년을 맞습니다.

2020 년은 향후 행성인이 성소수자 대중운동단체로서 방향을 새로이 설정하고 활동재생산의 기반을 닦아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올해는 저에게 행성인 활동을 마무리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회원여러분들과 함께 활동하고 운동을 고민해왔다면, 올해는 행성인이 성소수자인권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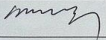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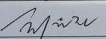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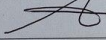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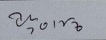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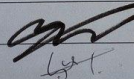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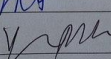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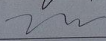
- 운영위원장 추천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운영내규 중

3. 운영위원장

1) 자격: 운영위원장은 행성인의 모든 활동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원칙에 동의하고 3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과 1년 이상 운영위원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20명 이상의 회원들의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회원, 후원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하고 사업추진력이 있어야 하며 통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기 회원을 2020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름	서명	응원의 한마디
김용관		목레드 레터민은 부탁드립니다.
지은		영남리 5월12일/16일
박치수(영남)		감사합니다
갈릭	garlic	응원합니다!
서수희		천복있으세요.
소유		2020 청담(이) 라시영!
장영민		올해로만 부탁해요~
박정민		잔부담해요!
지현화 (연대)		네이버!!
최현진		
유경		타정역.
마세미		온라인 회의팅
이호령		2021년까지 하이랑!!
김이영		특정성!!
고현호(유정)		가자!!!
한영(대)		독점~복
나정자		경의에 감사드리며!
강박권		강남시 8월
박예리		하이팅!!
김경탁		

● 지오 (사무국장)

- 활동 경력

2015년 가입

2016년 '성소수자구술아카이브' 참여

2017년 - 2019년 웹진기획팀

2017년 - 현재 행성인 상임활동

2018년 행성인 비상대책위원

2019년 - 현재 성평등위원회

2017년 - 현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9년 - 현재 무지개행동 성평등교육팀

2019년 - 현재 성소수자가족구성권보장을위한네트워크

회원이 중요한 단체입니다. 회원들이 무언가 도모하고 참여하는 일이 즐거울 수 있도록 품을 넓히는데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행성인도 저도 힘있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 곽이경

- 활동 경력

2002년 가입

2010-2011년 운영위원

2012-2013년 운영위원장

2014-2015년 조정위원장, 위원

2010년-현재 성소수자노동권팀 활동

부족하나마 회원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함께 채운다는 생각으로 활동하려 합니다. 몇년간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고 제가 하는게 맞을지 여전히 주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스스로에게도 좋은 방향의 변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회원 중심 단체의 방향성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활동이 2020년에 많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 슈미

- 활동 경력

2016년 행성인 가입

2016년~현재 성소수자노동권팀 활동

2018년 조직 개편 TF

2018년 운영 준비단

2019년 운영위원

2020년 노동권팀 팀장 (예정)

때때로 모임에서 부대낌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하호호 웃는데 저만 웃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부대낌을 외면하려 노력했고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혼자 견디고 있을 때 행성인을 만났습니다. 행성인의 활동을 보며 희망을 느꼈고 회원 모임을 통해 용기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존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행성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 오소리

- 활동 경력

2013. 5 가입

2013. 6 ~ 현재 행성인 웹진기획팀 활동

2015. 1 ~ 현재 성소수자부모모임 운영위원

2015. 2 ~ 2018. 3 행성인 운영위원

2015. 8 ~ 2016. 2 행성인 반상임활동가

2016. 3 ~ 현재 행성인 상임활동가

2018. 4 ~ 2018. 11 행성인 비상대책위원

2019. 2 ~ 현재 행성인 운영위원

2019. 2 ~ 현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활동을 하며 벽참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만큼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보람을 행성인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경험하고 싶습니다. 회원분들과 더욱 함께하는 행성인이 될 수 있도록 행성인 내 시스템을 정비하고 다양한 기획들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경

- 활동 경력

2012-2014년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활동
2017년 행성인 가입
2019년 성평등위원회(준) 활동
2019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TF 활동 참여

성소수자 인권 활동의 현장에서 행성인을 보아왔지만, 내부에서 함께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
니다. 앞으로도 행성인이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동료로 만나고 변화를 이끌어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2020년 행성인의 활동을 더 두텁게 만들고, 회원공동체로서 어떤 운동의 흐름
을 만들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 이호림

- 활동 경력

2011년 가입
2011년-2017년 HIV/AIDS인권팀활동
2014년 HIV/AIDS인권팀 팀장
2014년-2017년 행성인 운영위원
2015년-2017년 행성인 공동운영위원장
2011년-2015년 나누리+활동
2016년-2017년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땃동 운영위원
2017년 전환치료근절네트워크 활동
2019년 - 행성인 운영위원, 성소수자가족구성권보장을위한네트워크 담당

행성인에게 2020년은 단체의 내실을 다지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크고 작은 활동과 사업을 시도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행성인과 성소수자 운동의 앞으로의 모습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준비하는 한 해를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 조나단

- 활동 경력

2011년 가입

2012년-2019년 웹진기획팀 활동

2014년 웹진 팀장, 운영위원

2015년-2016년 조정위원

2017년 웹진팀장

2018년 운영위원, 비상대책위원

2019년 운영위원, 회원사업 및 교육국, 성평등위원회(준)

2020년 운영위원(웹진), 성평등위원회

함께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함께한 나날들이 잘 기록될 수 있도록 애써보고 싶습니다.

의결 1. 2. 조정위원

● 마당

- 활동 경력

2014년 가입

2014-2017년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활동(회원참여기획단, 서비스·판매직 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을 위한 ‘우다다 액션단’, 대안적 일상을 위한 해보면 기획단 등)

2014년 성폭력 피해자 재판동행 지원단 활동

2015년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이수

2018-2019년 행성인 웹진팀 팀장

2020년 현재 사단법인 비온뒤무지개재단 활동가

단체에 함께한다는 것은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때로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자리를 지켜야 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조정위원은 그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이기에, 수락에 고민이 많았으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회원이자 그리고 여성주의 운동에 함께했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있게 조정위원에 임하겠습니다.

● 아침

- 활동 경력

2016년 행성인 가입

1999년-2010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2003년-2005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연구원

2003년-2005년 인권교육네트워크 활동

2006년-2013년 한국NVC센터(한국비폭력대화교육원) 강사

2012년-현재 전쟁없는세상 비폭력프로그램팀 피망 활동, 비폭력트레이너네트워크 망치 활동

우리가 살고픈 세상을 만들려 애쓰는 조직이지만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기에 이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폭력이나 습관들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런 조직들 안에도 여러 폭력들이 존재할 수 있고 공동체의 손상을 야기하는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들도 자연스럽게 없고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체의 변화를 촉진하는 선물로 받아들이고 공동체의 회복을 돕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행성인과 함께 해나가길 희망합니다.

의결 1. 3. 감사

- 예리

- 활동 경력

2004년 행성인 가입

2008년~2016년 제조업 전략기획/경영관리

2016년~ 현재 O2O 스타트업 경영기획

2019년 행성인 감사

재무를 감사해보니 사업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로서 세상의 변화와 단체의 방향에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결 안건 2

2020년 정세 및 활동 목표

의결의 건

2019 년 활동평가

- 2019 년 행성인은 활동 정상화를 목표로 두었음. 연간 일정은 잘 소화했지만 행성인의 집중 의제를 찾고 인력과 예산난을 타개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 비상체제를 지나오면서 단체는 구조 확립을 꾀했다.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회원 제도를 개편했다. 성평등위원회(준)과 회원 사업 및 교육국을 신설하여 연간 활동의 안정화와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도모했다.
- 구조 개편은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도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전에도 높았던 운동의 문턱이 더 높아지기도 했다.
- 연대활동을 위시한 연례사업에는 행성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연대 운동의 비중이 커지면서 사무국 활동가를 비롯한 주요 활동가들의 역량이 집중되었다.
- 행성인만의 의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언어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가 고민으로 남는다.
- 청소년팀을 해산하면서 청소년 성소수자인권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지만 만들지 못했다.
- 지역사업은 시범적으로 지역회원모임을 기획 및 준비했지만 잘 조직되지 않았다. 운영 주체 위주의 기획사업이라는 평가가 있었고, 준비과정에 지역 회원들의 상황과 욕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 행성인 운영회의는 성소수자 노동권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성소수자 노동권팀과 함께 대중캠페인을 진행했을 뿐 아니라, 일가 아시아를 세션을 준비하면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교육을 진행했다. 이에 연장선상으로 성소수자 노동권팀과 사업을 구상했지만 과정이 충분치 않았다. 집중사업에 대한 준비와 기획은 올해 활동을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로 남는다.
- 재정안정화를 계획에 넣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 후원 배가와 회원 조직은 행성인의 활동을 바탕으로 이뤄짐을 거듭 확인하지만, 그에 대한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 성소수자 이슈와 언어들은 SNS 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활동 차원으로 SNS 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활동가 전반의 부담 속에서 단체의 활동은 더딜 수밖에 없었다.
- 내부적으로는 동력이 소진되고 바깥으로는 활동의 문턱이 높아져 활동가 층이 얇아졌다.
- 이러한 고충들을 고려할 때,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성소수자 대중들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는 조직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한다. 항상 반복되는 과제이지만 활동의 부담을 염두에 두면서도 기동성 있는 활동, 참여를 높이고 활동 접근성을 높이는 시도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인권 의제의 당위성에 앞서 보다 구체적으로 의제에 접근하고 대상과 목표, 활동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 대중운동 지향의 회원 조직과 활동가 중심의 운동의 간격을 어떻게 활동으로 메울 것인가. 구체적으로는 연대 단위 중심으로 이뤄지는 의제 운동의 내용과 과제들을 어떻게 회원들과 나누고 아래로부터의 운동으로 만들어낼 것인가가 향후 행성인의 과제로 남는다.

2020 년 정세 및 활동방향

- 최근 성소수자 시민권과 제도화를 이야기하면서 오랜 시간 구축해온 의제운동의 성과를 내자는 결의들이 나오고 있다. 올해는 군형법, 차별금지법, 동성혼 등 제도와 관련된 연대 활동들이 활발해질 것이다.
- 성소수자 제도화와 시민권이 논의되고 있지만 성소수자 운동의 비전과 전략은 불분명한 상황이다.
- 성소수자 운동은 이십 년이 넘는 시간에 비해 시도와 성과의 경험이 많지 않다. 이는 혐오가 우세했던 사회분위기 속에서 운동이 수세적이기 쉬웠던 배경이 작동하지만, 성소수자 운동사회 전반 대중운동과 거버넌스가 연결되지 못했던 한계도 있다. 성소수자 운동의 조직 뿐 아니라 운동의 기술과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부상한다.
- 제도 너머 성소수자의 삶을 보다 입체적으로 살피고 이로부터 성소수자 인권의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대중운동을 이끌어내고 조직해야 한다.
- 성소수자 커뮤니티 전반에 자신의 권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여느 때보다 높음을 확인한다. 트랜스젠더 이슈의 경우 군대와 학교 등지에 당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나왔다. 이에 대해 어떤 활동을 기획하고 조직을 모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시도들이 모색되고 있다.
-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는 2020 년은 총선을 앞두고 확인되고 있다. 주변에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후보 선언을 하고 출마를 결의하고 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운동은 이들과 어떤 협력을 모색하고 성과를 남길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 성소수자 의제는 많지만 그에 대한 논의가 단체 회원 뿐 아니라 커뮤니티 전반에서도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공론장을 구축하며 단체의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를 남긴다.
- 단체가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회원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야기를 모아내는 시도가 필요하다.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당사자 운동을 바탕 하지만 정체성과 당사자성을 넘어 성소수자

인권 의제를 확장해 나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담론을 만들어 나가는 장을 만들어내야 한다.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운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과 토론, 만남의 장들을 많이 만들고, 나아가 운동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그것은 행성인은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요구하며 사회의 변화를 갈망하는 이들이 모여 활동을 만들어간다는 그간의 활동가치에도 부합한다.

의결 2. 1. 2020 년 활동 목표

1) 변화를 갈망하는 이들이 찾는 행성인- 행성인의 활동 재생산 모색

- 회원사업 및 교육국을 교육기획국으로 전환하여 행성인 회원교육과 토론을 활성화
- 월례 교육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대상별로 다변화함으로써 회원 가입부터 활동가 교육, 캠페인, 의제 운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활동 재생산 구조를 구축하고 활동가층을 안정화
- 정기 프로그램과 더불어 시의성 있는 논의테이블을 만들어 사람들이 모여 기동력 있는 활동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운동 의제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활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함

2) 저항과 연대를 바탕으로 변화를 실천하는 행성인 - 집중활동 모색 및 구체적인 사업 구상

- ‘저항’과 ‘연대’의 활동가치를 바탕으로 행성인 성소수자 운동의 집중의제를 수립
- 성소수자 노동권의제를 집중사업으로 기획하면서 그 과정에 단체 안팎의 네트워크를 구축
- 트랜스젠더퀴어 TF의 활동팀 인준과 정식 활동을 통해 트랜스젠더퀴어 담론을 활성화

3) 안전하고 평등한 공동체 행성인

- 성평등위원회의 정식 인준을 통해 성평등 교육을 비롯한 일상 프로그램 정착
- 정기적인 평등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단체 내 의사결정구조를 모니터링
- 성평등 캠페인과 프로젝트를 시행함으로써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시민사회 전반 성평등가치를 고양

4) 장기적인 안정성이 담보되는 재정 구조 마련

- 현상 유지도 어려운 재정구조 타파! 활동재생산과 재정안정 순환 프로세스 확립
-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체계화구조 마련
- 향후 더욱 많은 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사무실 마련을 위한 후원 배가사업 기획 및 진행

의결 안건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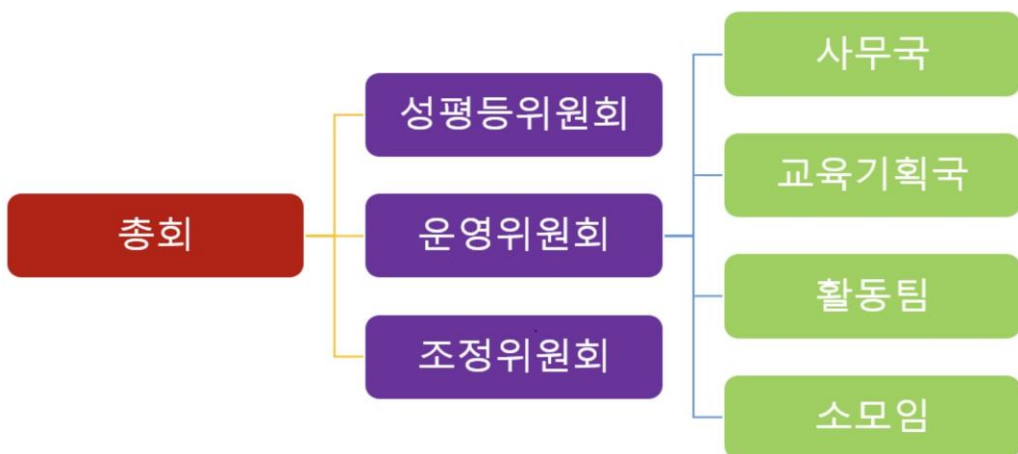
2020년 활동 계획 의결의 건

의결 3. 1. 조직 개편

1) 조직 개편의 필요성

- 2019 년 행성인은 단체 내 성평등 가치 고양과 더불어 성소수자 인권을 고민하고 활동을 함께 계획하며 성과를 고루 나눌수 있는 회원활동구조 마련을 목표로 삼으며 조직 개편을 진행했다.
- 이에 회원사업 및 교육국 및 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하여 활동과 사업을 집행했다.
- 올해는 단체 운영의 안정화와 더불어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찾아 이야기 나누고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과제가 던져졌다.
- 더불어 담당 활동가에게 과중되는 활동을 고루 분산할 수 있도록 활동의 집중도를 조절하고 체계를 구체화할 수 있는 구조를 모색해야 한다.

2) 조직도: 기존 사무처를 없애고 운영위 직속 단위로 사무국과 교육기획국을 두기로 한다.



3) 각 단위별 설명

(1) 총회

- 최고 의결기구의 위상을 갖는다.

(2) 운영위원회

- 일상적인 최고 의결기구로 행성인 활동을 심의, 의결하고 집행한다.
- 조정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은 별개로 구분함으로써 활동의 과잉 집중을 견제한다.
- 연대활동과 팀활동, 각 국의 활동에 참여하며 의제별 활동을 모색한다.
- 각 국과 활동팀에 참여함으로써 책임 있는 활동 분담을 실천한다.
- 역할: 팀장회의와 사무국 보고, 성명 및 입장 작성, 조정위 및 성평등위원회와 소통, 전략기획, 연간특별사업 계획 및 수행

(3) 조정위원회

- 성폭력을 비롯한 단체 분쟁사안 조정의 역할을 한다.

(4) 성평등위원회

- 반성폭력 의무교육을 담당하며, 그 외에도 회원전반 성평등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조직문화 모니터링,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약속을 바탕으로 성평등 담론을 만들어 간다.
- 핵심 개편사항: 2019년 성평등위원회(준)에서 정식 기구로 변경

(5) 교육기획국

- 월례 교육을 기획 및 진행한다.
- 단체 내 의제별 단위(활동팀 등)와 사업을 구상 및 준비, 진행한다.
- 활동 의제에 대한 고민을 심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교육과 토론회 등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모색한다.
- 회원 의무교육을 비롯한 디딤돌 및 회원모임, 및 활동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 핵심 개편사항: 기존 회원사업 및 교육국에서 교육기획국으로 변경함으로써 회원 교육과 토론 등의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에 집중한다.

(6) 사무국

- 상임활동가들로 구성된다.
- 역할은 현행 사무국 활동과 같다.

(7) 활동팀

- 구심력 있는 활동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팀원 자격을 정회원으로 둔다. 자율적인 활동과 더불어 단체 의제활동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서 운영위원회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한다.
- 트랜스인권 TF 팀을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으로 정식화함으로써 단체 내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이슈와 관련한 주력사업과 일상사업을 관장하며, 회원 및 커뮤니티 활동과 더불어 사회에 트랜스젠더와 젠더퀴어의 인권을 확장해가는 활동들을 기획한다.
- 웹진팀 활동을 종료한다. 웹진 기획 및 발행의 작업은 운영회의에서 주관하며 보다 활동 밀착적으로 기획한다.

(8) 소모임

- 자율적인 활동을 지향하며, 내/외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기획할 경우 운영회의와 함께 논의한다.
- 연간 등록제로 운영하며 반기 별로 활동을 보고하고 공유한다.

의결 3. 2. 회원사업 및 교육국 → 교육기획국

1) 2019 년 활동 평가

(1) 한눈에 보는 2019 년 행성인 회원 활동

	3	4	5	6	7	8	9	10	11	12	1
디딤돌											
의무교육											
의제교육	트랜스										
지역모임									광주		
기획단		육우당		서울퀴퍼			하반기 캠페인 기획단				
집중조직		420 참가단	노동절 참가단								
회원모임											

(2) 총평

- 회원사업 및 교육국(이하 회원국)은 2018 년 조직 점검 이후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의 필요성 제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세밀하고 안정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는 단위가 필요하다는 배경 아래 2019 년 처음 신설되었다.

- 회원국이 신설되면서 회원 조직과 교육, 프로그램 등 기획을 회원국에서 일임하게 되었는데, 한 단위에서 조직과 기획을 함께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회원 조직에 있어 운영위원회와 역할 분담이 분명하지 않게 되었고 운영위원회와 좀 더 유기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회원 조직에는 세밀한 설계와 역량 있는 활동가들의 협조가 필요됨을 느꼈다.

- 2019년에는 의무교육이나 기획단, 참가단 등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회원 조직과 교육의 기반을 만들고 구체적 방향성을 찾았다. 2020년에는 이를 토대로 교육 콘텐츠를 발전시키고 프로그램 기획을 좀 더 세밀하게 가져갈 계획이다.

(3) 세부 활동 평가

① 교육 프로그램

a. 회원 의무교육

- 2020년 새롭게 도입된 회원 의무교육 중 ‘행성인 활동/역사’에 대한 교육 내용을 행성인 10대 원칙을 기반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며 (신입회원모임 디딤돌에서 5회 진행, 회원 의무교육에서 3회 진행) 교육이 안정적으로 자리잡도록 하였다.

- 다만 교육 내용에 있어 10대 활동원칙 자체가 너무 주(主)가 되었다. 활동의 내용이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10대 활동 원칙이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b. 활동 의제 특별 교육

- 행성인 활동팀의 의제를 행성인 지향과 가치, 2019년 활동 기조 흐름에 걸맞게 회원들과 나눌 수 있도록 활동팀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3월에 진행된 트랜스 의제 회원모임 외에는 회원국과 활동팀이 함께 진행하지 못하고 각 활동팀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 회원국에서 각 활동팀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상호 소통이 부족했다. 2020년에는 각 활동팀과 좀 더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성이 보인다.

② 회원 조직

a. 회원 기획단

-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무적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주요 기획사업을 기획단으로 운영하기로 한 계획에 맞추어 세 차례에 걸쳐 기획단을 운영하였다.
- 상반기에는 故육우당 추모 문화 캠페인, 서울퀴어문화축제 때 각각 기획단을 운영했다. 각 기획단에서 캠페인을 기획하고 집행하며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으나, 기획단에 참여했던 회원들이 이후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 하반기에는 기획단 참여 회원들의 유기적인 활동 지속을 위하여 하반기 기획사업(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평등행진,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 주간)을 관통하는 틀인 ‘2019 하반기 캠페인 기획단’을 시범 운영하여, 상반기 기획단의 한계를 다소 극복할 수 있었다.
- 회원 기획단을 통해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사무적 능력을 키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기획부터 실천까지 회원들이 전반적으로 참여하는 데에는 성과가 있었다.

b. 집중 실천 조직

- 형식적 집회 참여를 극복하고 의미부터 실천까지 아우르는 사회운동 참여를 위하여 행성인이 참여하는 주요 집회(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 노동절)에서 참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 각 시기에 맞춰 카드뉴스 제작 및 발행, 오픈카톡방 운영, 사전/사후 집회 진행 등의 시도를 통해 집회 참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 다만, 매 시기마다 참가단을 운영하기에는 실무적 어려움이 있었고, 각 집회 때는 이미 주최측에서 준비한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 행성인 참가단의 독자적인 실천에는 한계가 있어 신선한 기획이 필요해 보인다.

c. 지역 회원모임

- 서울 중심의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며 지역 회원들의 소속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연 2 회 지역 회원모임을 기획했으나, 대구 회원모임은 참여 인원 저조로 진행되지 못했다.

- 광주 회원모임에서는 의무 교육, 차별잇수다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지역 회원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d. 참여형 활동 평가 프로그램

- 한 해의 활동 평가가 운영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활동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 내용을 평가하고 차기 총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했으나 별도의 활동평가단을 구성하지는 못했다.

- 다만 매 기획단/캠페인단 활동 이후 평가 회의를 진행하여, 이를 토대로 회원 사업 평가에 대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2) 2020 활동 방향 및 목표

- 2019 년 회원사업 및 교육국(이하 회원국) 활동을 통해 회원 조직과 교육/프로그램 기획을 한 단위에서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체계화된 회원 조직(쉽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역량을 높이고)의 필요성에 대해 운영위와 역량 있는 활동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회원국의 기존 역할 중 하나인 회원 조직은, 그 집중도를 높이고 실천을 통한 회원 역량 강화를 꾀하기 위해 운영위원회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회원국은 교육의 역할에 집중하며 이름을 교육기획국으로 변경한다.

- 교육기획국은 회원 교육을 위한 세밀한 설계를 진행하여 회원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교육 및 기획 프로그램의 내용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활동/가의 재생산’이라는 과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에 회원 가입 이후 활동가 교육, 캠페인, 의제별 운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3) 2020 세부 계획

(1) 교육/프로그램 내용 다변화

- 행성인 10 대 활동원칙과 행성인의 핵심 가치인 실천과 연대를 교육을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활동 역사를 포함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진행한다.
- 회원의 가입시기, 활동 참가자의 경험 등을 고려하여 활동 입문, 활동 심화 프로그램 등 내용을 다변화하여 기획하고 진행한다.
- 숨가쁘게 변화하는 성소수자 관련 이슈에 맞춰 시의 적절하게 회원번개 등을 기획하여 회원들이 해당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 활동 이슈, 의제별 교육 외에 회원 및 커뮤니티와의 접점과 친화력을 높이기 위해 삶, 정체성, 문화 등의 내용으로 교육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행성인 활동 참여를 유도한다.

(2) 활동 재생산 구조 구축

- ‘신입회원모임’을 ‘신입회원교육’으로 변경하여 교육에 방점을 찍고 진행하며, 향후 다른 행성인 회원모임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활동/가 재생산’을 위해 회원들의 경험과 역량의 차이를 넘어 편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의제 혹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교육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회원 조직의 과정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행성인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활동팀의 팀장 및 팀원들을 대상으로 조직역량진단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각 활동팀의 상황을 체크하고, 활동팀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한다.

의결 3. 3. 성평등위원회

1) 2019년 활동 평가

(1) 총평

2019 년에 신설된 성평등위원회(준)은 반성폭력 교육을 주관을 비롯, 회원 전반 성평등 감수성 높이기 위한 교육, 조직문화 모니터링, 반성폭력 규약 바탕으로 성평등 담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신설되었습니다. 왜 성평등위원회가 필요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시험하는 한 해였습니다. 첫 시작인지라 초반에는 다소 우왕좌왕했던 면도 없지 않았으나, 차츰 단체 내 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찾아나갔습니다. 평등한 문화라는 것이 완결된 형태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과정을 밟아가는 자체에서 의미를 만들어가고자 하였습니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램에 보완할 부분이나 더 필요한 지점들이 구체적인 방향에서 논의될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은 구성원들에게 보다 자신감을 부여하는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성평등위원회가 단순히 반성폭력 교육을 진행하는 단위를 넘어 평등한 공동체를 지향할 때 살펴야하는 지점들을 탐색하고 모아내는 단위로 그 역할을 분명히 하며 지속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규약토론회는 평등점검 및 약속해제 작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규약은 사후 절차를 중심으로 형식적인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공동체의 감수성을 맞추는 예방에 더 무게를 둔 성평위의 역할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규약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공동체에 필요한 규약이라 할 때 그 쓰임을 중점으로 회원들과 나눌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19 년 성평등위원회는 세부적인 계획들을 다 실행하지는 못했으나, 기반이 없던 조건 속에서 구성원들이 여러 계획들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동력을 얻었다는 점과 성평등위원회가 정식기구로써 활동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결실을 맺은 한 해였습니다.

(2) 세부 내용

① 반성폭력 필수교육 - 2018 년 반성폭력 필수 교육 자료를 참고로 한 성평등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진행	지역 포함 총 8 회 진행 의무교육: 5 월, 9 월, 11 월 (광주), 1 월 디딤돌: 3 월, 7 월, 9 월, 1 월
② 운영위원, 사무국, 팀장, 소모임장 반성폭력 심화 교육 진행 - 사례 위주로 구성되어 조직의 장으로서의 역할, 위치 성찰 및 자신이 속한 조직의 회원들과 함께 성평등 감수성을 높이고, 평등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실천 방향을 모색하는 교육 진행	2 회 진행 8 월, 10 월
③ 평등 점검표 - 연 2 회 ‘평등 점검표’ 프로그램을 통한 운영위, 팀, 소모임 내 조직문화 모니터링 - 운영위 및 팀, 소모임장 대상 평등 점검표 내부 교육 프로그램 진행 후, 각 조직에서 평등 점검표 작성 프로그램을 진행, 취합하여 단체 현황 파악	8~10 월 팀/소모임 대상으로 진행
④ 행성인 성폭력 사건 처리 규약 보안을 위한 회원 토론회 진행 - 단체 내 성평등 담론 향상을 위해, 규약 제정 시 회원들과 논의하여 고민을 풍부하게 녹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주제들을 바탕으로 한 회원 토론회 진행 - 주제: 성소수자 성폭력 (성폭력의 범위, 성격 등), 피해자 관점, 2 차 피해, 주변인의 책임 등	규약토론이 아닌 성평등 감수성 사례토론으로 진행 12 월 < 행성인 ASMR - a 안전하고 s 성평등한 m 문화 자알 r 만들어보기> 진행 ; 평등점검 결과 발표 및 약속 이행 활동 프로그램

⑤ 성평등 규약 정비 - 토론회를 포함한 2019 년 활동을 바탕으로 성평등 내규 보완, 개선	12~1 월 진행 19 년 신설한 성폭력사건처리규약, 조정위원회 운영 내규 검토
⑥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약속 해제 마련 -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약속 항목의 해제를 마련하여 그 의미를 생각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약속 보완	진행은 했으나 모아지진 않음 - 약속 익힘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화 ; 매년 기획
⑦ 타 단체 및 외부 활동가와의 교류 및 교육을 통한 성평등위원회 역량강화 - 상시: 무지개행동 반성폭력교육팀 활동 (지오) - 6 월: 무지개행동 성평등토양만들기 교육 수강 - 9 월: 무지개행동&오류동퀴어세미나 공동주최 미주한인 트랜스퀴어 반폭력운동 강연 및 무행활동가 간담회 참석해서 배우고 옴 - 11 월: 미주 한인 사회 내 트랜스퀴어 반폭력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심혜진 활동가와의 만남 및 교류 - 11 월 & 12 월: 나단님께서 다녀오셨던 운동단체 내 성폭력사건 해결 관련하여 이야기나누었던 자리	당초 계획에 있지는 않았으나,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자리에 참석하여 교류

2) 2020년 활동 계획

2020 년 성평등위원회는 단체의 정식기구로 출범합니다. 이에 우선 위원회로서의 성격, 운영위와의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평등위원회는 행정인이 평등한 조직문화를 지향한다는 단체의 주요한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점검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단위입니다. 평등한 문화가 성평등위원회는 평등한 조직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활동들을 해 나갈 것이나,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가장 주요한 단위는 운영위원회일 것입니다. 때문에 성평등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그러한 문화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사건 해결 과정에 있어 공동체의 역할을 운영위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파트너이자 조력자로 위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관계에는 때로 긴장도 수반될 것입니다. 때문에 성평등위원회는 단체 내 기구이나, 전반의 문화를 점검한다는 측면에서 운영위원회 산하의 팀으로 활동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운영위원회와 독립된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성평등위원회의 구성도 고민하였습니다. 온전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조정위원회와 같은 성격이 아니라, 협력이 중요함을 이해하여 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활동의 특성 상 팀처럼 정회원 모두에게 열어두기는 어려웠습니다. 성평등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 구성원 기준: 운영위와 성평위 구성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와 성평위 구성원의 동의를 얻은 자

성평등위원회는 독립된 기구로써 단체 내 특수한 위치에 있음을 이해하여 경계심을 가지고,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물론, 성평등 담론을 형성해가는 단위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3) 2020 세부 계획

(1) 반성폭력 필수교육 - 2019 년 반성폭력 필수 교육 자료를 참고로 내용을 보완하여 성평등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진행 - 화상교육 진행 시도해보기 (지역)	의무교육 2 회 신입회원모임 디딤돌 4 회
---	---------------------------------------

(2) 운영위원, 사무국, 팀장, 소모임장 임원 교육 진행 -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의무교육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기획 (전쟁없는세상 등 타 단체 교육 프로그램 참조)	임원 교육 2 회 (3 월 27 일 또는 28 일 중 1 회, 4 월 9 일 또는 10 일 중 1 회)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2 회 진행. 참석 가능 날짜에 1 회 참석. 날짜 확정은 총회 이후 취합
(3) 평등 점검표 - 하반기 ‘평등 점검표’ 프로그램을 통한 운영위, 팀, 소모임 내 조직문화 모니터링 - 운영위 및 팀, 소모임장 대상 평등 점검표 내부 교육 프로그램 진행 후, 각 조직에서 평등 점검표 작성 프로그램을 진행, 취합하여 단체 현황 파악	19 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지만, 점검할 내용 보완 및 검토 매년 진행하여 아카이빙이 될 수 있도록 함
(4) 성평등 규약 토론 준비	공동체에 필요한 규약이란 무엇인지를 염두하여 개념이 아닌 그 쓰임에 역점을 두고 회원들과 토론할 수 있는 방향 논의
(5) 성평등 규약 점검 - 2020 년 활동을 바탕으로 성평등 내규 보완, 개선	
(6) 행성인 ASMR 두 번째 - 평등점검표 결과 발표 및 약속 익힘 사례 토론을 위한 회원모임	
(7) 조직문화점검 프로그램화 - 공모사업 계획 - 인권프로젝트 온 사업 계획 신청 (3 월 11 일 발표)	성평위의 활동을 정리하여 조직문화점검에 필요한 활동들을 프로그램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뉴얼을 만들어본다. 성평위에서 1 년동안 진행할 계획들을 정리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무겁지 않게 계획

의결 3. 4. 활동팀

3. 4. 1. HIV/AIDS인권팀 (공동 팀장: 갈릭, 도희, 빌리, 영민)

1) 2019 활동 평가

팀 활동이 정상화 되면서 HIV/AIDS인권팀은 2018년부터 이어온 한국 HIV/AIDS 운동의 흐름을 회원들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주된 활동은 ‘월간 에이즈’ 세미나 프로그램으로, HIV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의료차별, 미검출 = 감염불가 캠페인, 노출 전 예방법/프렙, HIV/AIDS 선전물의 역사 등 다양한 이슈들을 주제로 2019년 5월부터 5회간 진행하였습니다. 팀원들의 관심과 흥미를 담아 기획된 ‘월간 에이즈’는 1차적으로 기획과 본 행사에 참여한 팀원의 역량 증진을 꾀하는 장이 되었으며, 2019년 목표로 삼은 ‘내실 다지기’를 실천으로 옮긴 예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속성을 담보한 기획 덕에 HIV/AIDS 인권 현안들을 시의적절하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월간 에이즈’는 팀 활동의 접촉면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이즈에 관심이 있던 비회원의 참여도가 높았던 덕에 팀 안에 머무른 논의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논의가 진입장벽이 높다는 피드백을 토대로 하여 다양한 난이도의 논의를 개인의 관심에 맞추어 참석하도록 하면서 기존엔 만나지 못한 많은 인연들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팀원 유입으로 이어졌고, 궁극적으로 내실을 다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0년에도 에이즈에 대한 논의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활동을 기획합니다. 이를 위해 성소수자 인권포럼에 참여하고, HIV/AIDS인권팀이 비수도권 지역의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하여 부스 프로그램 및 발언을 통해 능동적으로 논의의 장을 찾고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2020년 HIV/AIDS 인권팀은 팀장단을 꾸려 기존 공동팀장제도보다 많은 사람들이 팀 운영의 부담을 나누어 짊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팀장의 자격이 분담된 만큼, 팀장단 안의, 팀장단과 팀원 간의, 그리고 팀과 운영위 간의 소통이 원활해야 할 202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인원이 활동의 부담을 나누되, 활동의 연속성을 이어갈 방법을 모색하려 합니다.

2) 2020 활동 목적

-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HIV/AIDS 이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운동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만남과 대화의 장을 발굴
- 팀장단, 팀원, 운영위원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이하 에이즈예방법) 19조 폐지 운동에 참여하면서, 성소수자 인권운동에서 HIV/AIDS 운동의 중요성을 회원들과 나누는 교육 진행.
- 연대체들과의 모임과 대화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감염인 인권 담론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단체 내부에 공유하는 기회를 확대.

3) 2020 연간 활동계획

● 연간 활동:

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성소수자 인권포럼 세션 기획												
팀 소풍												
팀 내부 세미나												
행성인 회원 교육												
서울퀴어문화축제 준비와 참여												
비수도권 퀴어문화축제 참가 (3회)												
에이즈인권주간 행사 기획과 참여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 연중 활동:

- 연대체 활동: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회의, 워크숍, 에이즈예방법 19조 폐지 운동)
- 연대 단체: 청소년·청년 감염인 커뮤니티 ‘알’, KNP+, 나누리+
- 웹진 기고

4) 2020 세부 계획

(1) 연대활동 (연중)

-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 월례회의, 워크숍 등
- 연대단위 활동에 팀원 참여 독려

(2) 팀 소풍

- 팀 내 소속감 및 친밀감 향상을 위해 서로를 알아가고 소통하는 자리 마련

(3) 팀 내부 세미나

- 팀원들 사이 지식의 편차를 고려하여 내부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HIV 관련 정보 습득에 대한 팀원들의 욕구 충족과 운동의 언어 습득을 꾀함
-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HIV/AIDS 인권팀이 담당할 수 있는 논의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지속 (예: PrEP, 노동권, 장애)
- 연대 단체 연계모임: (상반기) 알 (하반기) KNP+

(4) 행성인 회원 교육

- 성소수자 인권단체로서 HIV/AIDS와 감염인 인권증진을 다룬 역사와 맥락, 그리고 운동의 현안을 회원들과 공유. 이를 통해 HIV에 대한 회원들의 민감도를 높이고 운동의 참여자로서 입장 형성을 추구
- 5월 19주 폐지 (+PrEP, U=U) + 퀴어문화축제 혐오 대응교육
- 8월 HIV/AIDS 기본 교육
- 10월 HIV/AIDS 심화 교육

(5) 서울퀴어문화축제 준비 및 참여

- 연대단체와 퀴어문화축제 부스 운영 및 캠페인 진행

(6) 비수도권 퀴어문화축제 참여

- HIV/AIDS 논의가 가능한 장을 능동적으로 발굴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여러 지역에서 개최되는 퀴어문화축제에서 행성인 부스 일원으로 참여하여 HIV관련 정보를 나누는 활동과 발언을 기획

(7) 에이즈 인권주간(세계 에이즈의 날) 행사 기획, 참여

- 연대 단위에서 진행하는 에이즈의 날 행사 기획 및 참여
- 팀원 및 행성인 회원들의 행사 참여 독려

8) 인권포럼 세션 기획

- ‘미검출은 감염불가’ 업데이트: 최신 연구 동향 및 세번째 U, universal 살피기
- 한국에서의 U=U 담론: U=U를 활용한 캠페인과 그 맹점을 논의

3. 4. 2. 성소수자노동권팀 (팀장: 슈미)

1) 2019 활동평가

(1) 한눈에 보는 2019 성소수자노동권팀 활동

초기 계획	2	3	4	5	6	7	8	9	10	11	12
문화 모임											
하계 워크숍											
회원 대상 강의	일정 미정										
자기 기록											
연대 사업											

실제 수행	2	3	4	5	6	7	8	9	10	11	12
하계 워크숍											
ILGA ASIA 준비 세미나											
노동법 강의											
퀴어 노동 강의											
일하는 성소수자 토크쇼											
대학교 성소수자 노동 강의											
연대 활동											

(2) 평가

2019년 노동권팀은 연대 활동 활성화 및 다양화, 지속 가능한 활동 구조 모색을 위한 힘과 배움을 목표로 활동을 구성했었다. 2019년 노동권팀 활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계획했던 것에서 많은 변동이 있었으나 팀원이 많이 축소된 상황이었음에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한 해였다.

ILGA ASIA 준비 세미나를 통해 지금까지의 노동권팀 활동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정리할 수 있었고 이 자료들을 토대로 퀴어 노동 강의도 기획할 수 있었다. 퀴어 노동 강의는 강의 기획부터 진행까지 해보는 경험을 통해 팀원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으며 교육을 들은 형성인 회원들의 만족도도 높아 매년 진행하면 좋겠다는 내부 평가도 있었다. 또 한, 퀴어 노동 강의와 연계해 준비

했던 일하는 성소수자 토크쇼는 본업 있는 활동가에 대한 회원 단체로서의 고민에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소중하다.

2019년도 연대 활동이 활발했다. 태안 화력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고 김용균 추모제, 콜텍 투쟁, 현대 기아차 비정규직 투쟁 문화제, 쌍용자동차 범국민대회,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 동지의 고공농성 연대 문화제, 이주노동자대회,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직접 고용 쟁취 투쟁 문화제 등등 수많은 투쟁 현장에 방문하거나 지지 현수막을 보내거나 연대 발언을 했다. 노동 의제가 점차 다양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2020년도 성소수자 관점에서 노동 이슈를 바라보는 작업과 어떤 의제에 집중하고 어떤 단위와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려고 한다.

성소수자 노동자 가시화를 위한 활동도 멈추지 않았다. 올해 처음으로 노동절과 전국노동자대회에 행성인 차원에서 성소수자 참가단을 구성하여 ‘행동하는성소수자가 일터를 바꾼다.’, ‘성소수자는 평등한 일터를 원한다.’ 등의 성소수자 노동권 의제가 담긴 현수막과 피켓으로 참가했다. 성소수자 참가단은 20명 내외로 소수의 인원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피켓과 함께 인증샷을 찍는 등 우리의 구성원들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아쉬운 점도 있다. 적은 팀원들이 다양한 외부 상황에 활동을 주력하게 되면서 자기 기록이 미진했던 점과 신입 팀원 유입이 미비했던 점이 아쉽다. 2020년은 보다 내실을 다지면서 새로운 팀원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2) 2020 활동계획 및 목표

(1) 한눈에 보는 2020 성소수자노동권팀 활동

	2	3	4	5	6	7	8	9	10	11	12
성소수자 인권포럼											
노동절											
서울 퀴어 퍼레이드											
외부 월간지 기고											
하계 워크숍											
퀴어 노동 강의											
일하는 성소수자 토크쇼											
자기 기록											
연대 활동											

(2) 2020 활동 목표

- 성소수자 노동권 의제 다양화
- 신규 팀원 유입 및 팀원들의 역량 강화
-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한 내부 다지기

3) 2020 세부 계획

(1) 2020 성소수자 인권포럼

- 민주노총 성소수자 조합원 모임과 함께 성소수자 노동권에 대한 세션 진행

(2) 노동절

- 성소수자 노동권과 관련된 논평 기고
- 운영위에 2019 성소수자 참가단 형태의 2020 성소수자 참가단 제안

(3) 서울 퀴어 퍼레이드

- 성소수자 노동권 의제가 담긴 현수막을 제작하여 참가 예정

(4) 외부 월간지 기고

- 성소수자 노동권과 관련된 글 기고 예정
- 현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소통 중

(5) 하계 워크숍

-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 잠시 쉬어가는 하계 워크숍 진행

(6) 퀴어 노동 강의

- 2019년 퀴어 노동 강의를 통해 팀원들이 기획부터 진행까지 경험을 쌓으면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었음. 교육을 들은 행성인 회원들의 만족도도 높아 매년 퀴어 노동 강의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내부 평가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매년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강의 진행

(7) 일하는 성소수자 토크쇼

-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패널들을 섭외하여 지속적으로 본업 있는 활동가들의 고민을 나누는 자리 마련

(8) 자기 기록

- 그동안 노동권팀은 존재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성소수자 노동자들을 가시화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는 성소수자들을 만나 그들의 노동을 기록했었음. 올해는 노동권 팀원들이 스스로의 노동 기록할 예정.

(9) 연대 활동

- 지속적인 집회 참여, 연대 발언, 지지 현수막 제작 외에도 지속적으로 성소수자 관점에서 이슈를 바라보는 작업과 어떤 의제에 집중하고 어떤 단위와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 예정

3. 4. 3. 웹진기획팀

1) 2019 활동평가

웹진기획팀은 침체됐던 팀 분위기를 살리고자, 새로운 팀 운영체계(편집장 순환체제), 팀 역량 및 팀워크 향상을 위한 워크샵 및 프로그램, 회원들의 웹진 참여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의 다양한 시도들을 했다. 하지만 18년 비상체제를 거치면서 웹진기획팀의 일상적인 1년 활동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부족했고 팀원들의 일신상의 변화 (취업, 진학 등)로 인해 회의 날짜를 정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기획했던 많은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지 못했다. 한 편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회원들이 웹진에 기고하고자 하는 욕구가 줄어들었고 격월에 한 번 발행하는 웹진의 시스템은 시대의 빠른 흐름을 따라가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웹진기획팀에서는 연간 36 개의 글을 발행하며 행성인의 활동의제와 소식을 전달하며 최선을 다하였다.

한 편, 웹진 ‘랑’에 누적된 수많은 글들은 (총 1,578 건) 존재 자체로 아카이빙 역할을 하며 성소수자 의제, 이슈에 대한 정보전달은 물론, 담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2019 년에 36 개의 글이 발행된 것에 비해 연간 방문자수가 101,803 명을 기록한 것이 방증한다.

이에 운영위원회와 웹진기획팀 간의 논의 끝에 웹진의 형식은 유지하되 웹진 발행 체제에 변화를 주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방향에 따라 웹진기획팀도 해산을 맞게 되었다.

2) 웹진기획팀 해산의 변

어느 단체나 그 단체의 활동과 소식을 전하는 매체는 무척 중요합니다. 행성인은 동인련 시절부터 소식지를 통해 단체의 활동을 알려왔습니다. 당시 오프라인으로 발행되었던 소식지는 온라인 매체가 활발해진 당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웹진 랑의 창간입니다.

웹진 랑은 2008 년 발행을 시작으로 행성인의 활동 소식은 물론 성소수자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왔습니다. 10 년이 넘는 시간동안 무려 1500 개가 넘는 글들이 발행되었으니 2010 년대 행성인의 역사와 성소수자 의제의 변천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자신의 글을 기고할 창구가 되어 주기도 했고 회원들의 소식을 알리는 소통창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웹진은 다시 한 번 변화를 꾀해야 하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1 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SNS 와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글과 생각을 담는 창구를 직접 만들고 배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기획하고 표현하는 많은 매체들이 등장했습니다. 이에 기고자를 찾는 일이 전보다 어려워졌으며 두 달에 한 번 함께 모여 기획 회의를 통해 발행하는 웹진의 시스템은 시대의 발빠른 흐름을 다 따라가기 힘든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웹진 발행의 방식에 다시 한 번 변화를 주려 합니다. 기존에 팀 체제로 운영되었던 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단체 기관지로 변모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웹진의 형식은 그대로 두되, 팀 체제로 운영하던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합니다. 웹진은 다시 처음의 역할로 돌아가 단체의 활동 소식을 주요하게 전하면서, 회원 기고란을 통해 기고의 기회는 열어두는 방향으로 재편됩니다. 기존에 기획을 통해 발행하던 방식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미디어의 흐름과 웹진의 기능을 고려하여 보다 기동성 있게 단체 소식을 전하는 역할에 충실하고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웹진기획팀도 해산을 맞게 되었습니다. 팀원으로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회원분들께는 너무도 가슴 아픈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비단 한두 번의 고민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며, 현실을 받아들이고 결정을 내리기까지 아프고 힘든 논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준 웹진기획팀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3) 2020 웹진 계획

(1) 체제 변화

- 웹진기획팀에서 기획 회의를 통해 발행하는 웹진의 시스템을 시대 변화에 발맞춰 변경
- 단체 기관지 형태의 체제로 변경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및 관리
- 웹진 담당 운영위원: 오소리, 조나단

(2) 역할

- 기동성 있게 단체의 입장, 소식을 전달
- 회원 기고란을 통해 회원들의 이야기를 전달
- 전문가 기고란을 통해 성소수자 의제, 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전달하여 담론 형성

3. 4. 4.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공동팀장: 빌리, 푸른)

1) 2019 활동 평가

2019년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은 Task Force체제를 이어왔습니다. 팀 안팎의 상황으로 인해 인력보충이 시급한 채로 시작하였지만, 2019년 서울 퀴어문화축제 부스 프로그램 기획을 기점으로 활동에 관심을 가져준 분들 덕에 팀원을 보충하여 본래 계획한 활동들을 소화해낼 수 있었습니다. 팀 활동을 통해 성소수자 운동에 처음 발을 내딛은 팀원이 많았기에 활동에 대한 서로의 온도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해가며 천천히지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야기를 운동으로’와 같은 활동을 통해 팀원들의 서로 다른 삶의 궤적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적 서사로만 존재한 경험들을 모아 사례로 가공하여 회원교육에서 사용하는 주체적인 활동들이 일어나갔습니다.

또한, 트랜스젠더퀴어인권TF팀은 행성인에서 트랜스젠더퀴어 인권 옹호 활동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끊임없이 고민하였습니다. 아직 뚜렷한 답은 없지만, 다양한 성소수자들이 모이는 단체인 행성인에서 가져오고 있던 트랜스젠더 인권 관련 활동의 맥락을 잇고 상시적으로 이 인권의 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위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2018년에 TF팀 활동을 계획하던 도중 먼저 떠나버린 전 팀장 모모를 추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모모와 함께 기획하던 활동들을 팀원과 참여자분들과 나누며 지금 팀 활동의 역사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줄곧 행성인이 참여해온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사에는 팀원들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TF팀이 공동주최로서 부스 행사를 진행하고 집회에서 깃발을 띄우고 행진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은 시작부터 트랜스젠더 이슈로 뜨거웠습니다. 변희수하사 강제전역과 숙명여대 학생 입학포기는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인권이 얼마나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은 정식 인준을 계기로 좀 더 대외적인 활동에도 힘을 써보려 합니다. 우선 이번이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장을 열겠습니다.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트랜스젠더 혐오가 범람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보려 합니다. 또한 각 퀴어문화축제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연대의 정신을 다시 새기겠습니다. 하반기에 열릴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사는, 행성인의 트랜스젠더퀴어 인권 활동의 방향성과 역할을 정리하여 타 트랜스젠더 단체들과 공동주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2) 2020 활동 목적

- 회원 모임, 교육 등을 통해 트랜스젠더퀴어 인권 활동에 관심이 있는 활동가 발굴 및 팀원 모집
- 교육 진행 및 활동 기획에 있어서 팀원들의 역량 강화 및 팀원 소속감 증진
- 여러 지역 퀴어문화축제 및 타 단체와의 공동 주관 행사 등의 대외 활동 기획 및 참여
- 트랜스젠더 관련 의제들의 가시화와 정치화 관련 활동 참여

3) 2020 연간 활동계획

연간 활동:

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3/8 여성대회 트랜스젠더 행진단 참여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행사												
회원교육												
2020 총선 맞이 혐오 발언 모니터링												
모모추모제												
서울퀴어문화축제 기획 및 참여												
인천퀴어문화축제 참여												
비수도권 퀴어문화축제 참여												
다른 활동팀과 활동 공유 및 만남의 장 마련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사 (공동) 주최												
팀 송년회												

연중 활동:

- 웹진팀 기고

4) 2020 세부 계획

(1) 3/8 여성대회 트랜스젠더 행진단 참여

- 민주노총에서 준비하는 여성의 날 맞이 여성대회에서 트랜스젠더 행진단에 깃발을 들고 참여
- 행진단 참여를 계기로 여성운동의제에 대해 공부하고, 트랜스젠더 운동과 여성 운동이 만나는 지점을 함께 고민할 수 자리를 마련

(2)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행사

- 2020년 1월과 2월을 물들였던 트랜스젠더 개인들의 가시화와 이에 따른 연대의 목소리, 혐오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트랜스젠더 차별의 사례를 모으는 행사 기획
- 차별의 사례를 모으는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트랜스젠더 차별이 우리 곁에서 살아가고 있는 당사자들의 실존하는 경험임을 알림

(3) 회원교육

- 2019년 회원교육안을 발판삼아 연 2회,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진행
- 5월: 기본교육 - 젠더브레드펄슨을 이용하여 성별정체성-성적지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전달
- 10월: 심화교육 - 젠더의 개념을 더 깊이 알아보고 논의하며 성소수자 운동에서 트랜스젠더 의제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들을 짚어봄

(4) 2020 총선 맞이 혐오 발언 모니터링

- 다가올 총선에서 트랜스젠더 혐오가 범람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

(5) 모모추모제

- 전 팀장 모모를 추모하며 그의 활동 목표를 상기하는 자리를 기획

(6) 서울 퀴어문화축제 기획 및 참여

- 트랜스인권 이슈에 관련된 부스 행사 기획 및 진행

(7) 인천 퀴어문화축제 참여

- 트랜스인권 이슈에 관련된 부스 행사 기획 및 진행

(8) 비수도권 퀴어문화축제 참여

-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에서 팀 부스, 혹은 행성인 부스의 일부로 참여하여 트랜스젠더 의제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프로그램 및 발언을 기획

(9) 다른 활동팀과 활동 공유 및 만남의 장 마련

- 트랜스젠더 의제가 다른 활동팀의 의제와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고민하는 간담회를 주최하여 한국에서 트랜스젠더로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를 촘촘히 고민하고 기록으로 남김

(10)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사 (공동) 주최

-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맞아 팀 내 자체 웹진 기고 등을 통해 행성인 회의들의 트랜스 인권 의식화를 위한 활동 기획 및 진행.
- 행사는 여력이 되면 자체적으로 진행하되, 어려울 경우 타단체와 공동으로 주최.

(11) 팀 송년회

- 팀 내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연말에 친목 도모의 장 마련

의결 3. 5. 사무국 및 기타 사업

3. 5. 1. 사무국

1) 2019년 보고사항

(1) 2019년 회원/후원회원 추이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총합
가입	8	4	10	9	11	7	6	6	2	4	16	5	88
탈퇴	16	8	9	11	6	6	4	3	3	1	6	7	80
일시 정지	2	0	5	1	1	0	0	0	1	0	0	0	10

- 2020 년 2 월 29 일 기준 CMS 등록 회원 수 770 여 명. (2019 년 2 월 기준 770 여 명과 동일한 수준)

(2) 뉴스레터 발행

- 매주 화요일 1 회 발행. 총 43 회 발행
- 구독자 797 명 (2 월 10 일 현재) ; 평균 클릭률 30%

(3) 상담

- 진행 상담 23 건: 메일상담 11 건, 전화상담 12 건
- 사무국 내 공유는 잘 되는 편이나, 기록/관리는 공유 차원에 그치고 있음.
- 전체 상담 건 중 아웃팅 관련한 상담 비율이 높았으며,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음. 희망법, 천주교인권위 (매주 월요일 무료 방문 상담 4 시) 등 법률 지원이 가능한 단체나 개인

변호사들을 연계하고 있지만, 문제가 법으로써 해소되는 데는 현실적 제약이 높고 한계가 있음에도 하나의 과정이나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수단으로 접근하는 현 상황에 대한 고민들이 남음

2) 2019 년 평가

2019 년 행성인은 내부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무국은 단체 일상을 잘 유지하기 위한 기본 업무에 충실하고자 했다. 회원관리, 재정관리, 기록관리, 사무실 운영 등의 업무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예상했던 바와 같이 현안 대응, 연대 회의와 같은 대외활동에 더해 단체 전반에 활동 인력이 줄어든 데다 회원사업 및 교육국, 성평등위원회(준) 등 기구가 신설되면서 상임활동가들이 단체 내부적으로 여러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운영에 필요한 기본 업무 외에 목표한 만큼의 체계를 갖추는 데는 부족함이 컸다. 19 년 주요한 목표였던 행성인 등록 회원 조사 역시 하반기에 회원 정보 업데이트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마무리를 짓지는 못했다. 2020 년에는 2~3 주 정도 기간을 미리 정해두고 집중적으로 수행하여 상반기 내에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무국 회의는 비교적 정기적으로 잘 이루어진 편이며, 그에 따라 업무 공유에 큰 빈틈이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실무 처리에 치중된 경향이 높아서 이슈에 대해 기민하게 토론하는 자리는 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다. 매주 빠짐없이 뉴스레터를 발송하였고 신입회원, 해지자들에게 확인과 감사 연락을 드리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이는 행정업무를 분담하여 맡은 덕분이었는데 역할 분담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았으나, 각자 예상하지 못한 업무가 발생하는 활동의 특성을 감안할 때 비교적 잘 이루어진 편이다. 그러나 이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분담되었던 것으로 때로는 역할에 혼선이 빚어 지기도 했기에 차후 보다 조직적이고 기술적인 보완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사무국장 1 인의 반성폭력 전문 상담 교육 이수 역시 일정에 밀리거나, 공지를 놓쳐 수행하지 못했다. 반성폭력 교육 이수를 위해서는 3~4 개월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비워야 하는 까닭에 여건이 여의치 않았다. 대신 무지개행동 반성폭력교육팀 활동과 성평등위원회(준)의 활동을 기반으로 한 논의들에서 이해와 배움이 컸다. 교육 이수는 계속 염두하여 공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3) 2020 년 계획

함께 활동하는 사무국

활력 있는 사무국

올해 역시 기본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자 한다. 행정 업무에 대한 역할 분담이 작년과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역할에 큰 혼선은 없을 것이다. 업무 체계화는 매년 부족한 부분으로 평가되었던 만큼 미뤄두었던 업무 체계화를 한 번에 다하지는 못하더라도 가능한 선에서 하나씩 시도해 나가자 한다. 최소한의 목표는 19 년에 새로 구입한 외장하드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단체 자료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올 해 행성인의 주요한 방향 중 하나는 회원 조직 강화인 만큼 사무국에서는 조직에 가장 기본적인 활동들을 미루지 않고 해 나가야할 필요도 있다. 최우선으로 회원 정보 업데이트를 상반기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무엇보다 회원들과 많이 만나는 사무국이어야 한다. 회원들과 소통하고 접점을 늘리며 회원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무국부터 활력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한편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로서 상임활동가들은 현안 대응을 위한 이슈 대응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활동가들이 특정 이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파악하고 이해를 높여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감각을 갖추는 일과 이슈를 대중에게 알리고 대중 행동을 조직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는 일 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이슈 대응력이다. 상임활동가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역량 중 하나인 만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한 달에 한 번 주제를 정해 사무국 회의에 앞서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3. 5. 2. 대관 사업

(1) 대관 사업 안내

① 행성인 공간 대관 안내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각종 회의, 세미나, 강연, 소규모 행사 등 다양한 목적을 충족시킬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 인권의 가치를 확장하고 인권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이곳에서 펼쳐집니다.

② 공간 소개

- 4 층 작은 모임방 (소회의실) : 시간당 5 천원 / 최대 8 명 이용가능
- 4 층 다목적 공간 ‘무지개뿔밭’ (교육장) : 시간당 1 만 5 천원 / 최대 45 명 이용가능 (테이블 세팅 시 30 명)

③ 지원

- 인권단체 또는 인권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이용료의 30%를 지원해드립니다.
- 행성인 회원의 개인대관 시 30%를 지원해드립니다.
- 회원이 속한 단체 대관 시에도 회원 명의로 대관 시 적용됩니다.
- 행성인이 속한 인권단체 연대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를 지원해드립니다.

※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 대관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2) 대관 사업 보고

- 2019 년 3 월 공지
- 2019 년 7 월 첫 대관 신청 이후 12 회 대관 (교육장 - 9 회 , 소회의실 - 3 회, 7 월 이전 대관은 성소수자부모모임임)
- 2020 년 주 담당자: 상임활동가 오소리

3. 5. 3. 2019 비상체제 아카이빙 사업 보고

1) 활동 개요

(1) 담당자: 소유, 상차이, 조나단

(2) 취지: 비상체제 시기의 행성인 활동 (비대위와 조정위 활동)을 정리하여 단체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며, 향후 운영위원, 조정위원이 필요 시 참고하고 활동 시 이 시기의 의미를 새길 수 있도록 했다.

2) 활동 결과

(1) 회의 내용 정리

폴더 정리, 회의자료 리스트업 (안건지, 속기록, 회원에게 공유한 회의 요약 기록, 회의 시 참고 자료), 회의록 일자와 제목 서식 통일

(2) 비상체제 시기 회원 프로그램 활동 내용과 결과, 평가 기록

자료 일자와 제목 서식 통일, 회원 프로그램 (반성폭력 교육, 평등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비대위원 팀 - 소모임장 워크샵, 회원 심층 인터뷰, 회원 집담회, 조직문화 인터뷰 보고회, 임시총회 등) 교육 자료, 참가자 수, 속기록, 프로그램 평가 정리

(3) 비상체제 시기 사건 관련 활동 내용 기록

조정위원회에서 직접 진행함. 비밀 유지를 위해 사무국에만 공유. 비상체제 시기 조정위 회의록, 사건 별 조사 기록, 결론 도출 논의 과정, 결과문 등

3) 평가

향후 2018년의 활동에 대하여 기록을 통해 참고하고자 하는 운영위원, 조정위원, 사무국이 빠르게 원하는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일되지 않은 채 있던 회의 제목, 프로그램 진행 파일, 평가, 단체 채팅 프로그램(텔레그램)에만 저장되어 있던 자료 등 기록물이 맞는 폴더 내 일관된 형식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문제의식을 빠르게 파악하도록 회의 일자 별 토론 내용 및 의사 결정 내용을 키워드로 묶어 정리하는 계획을 처음에 세웠으나 진행하지 못했다. 각각의 회의록에 흩어진 내용이 워낙 많았으며, 초기에는 회의록이 속기록 형태로 기록되었으나 나중에는 의사결정 내용 위주로 기록되는 등 형식의 변화가 있어 내용을 담을 통일된 기준과 형식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가서 등이 없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흩어진 파일들을 모두 찾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 아카이빙 공개 범위 : 운영위원, 조정위원, 사무국 한정

공개 범위 한정 이유: 조정위 활동, 개인정보가 포함된 집담회, 인터뷰 속기까지 아카이빙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 그 외의 아카이빙 자료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회원들도 파악 가능함. 운영위 회의록은 회원이면 누구나 열람 가능하며, 진행된 프로그램의 경우 웹진에 후기가 올라와있음. 집담회 및 인터뷰 내용은 결과보고서가 있어 행정인 사무실에서 열람 가능.

3. 5. 4. 2020 노년 성소수자 생애사 기록 프로젝트

80대 레즈비언 생애사를 기록했으면 좋겠다는 행정인 회원 썬님의 제안을 바탕으로 생애사 기록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 학계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운동에서도 노년 성소수자의 삶에 대한 기록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프로젝트를 노년 성소수자 생애사 기록으로 확장함. 2월 현재 다음세대재단의 프로젝트 지원을 준비 중임.

(1) 초동 기획: 지오, 호림, 전원근, 임동현

(2) 프로젝트 진행

① 생애사 기록팀 모집 및 교육 진행 - 행성인 회원 및 성소수자 연구자를 중심으로 생애사 인터뷰를 진행할 생애사 기록팀을 모집할 예정임. 기록팀에 대한 교육은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에 제안하여 생애사 인터뷰에 필요한 관점과 방법, 기록자의 윤리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임.

② 생애사 기록 수집 - 생애사 기록 수집은 2013년 HIV/AIDS 인권팀에서 진행한 “4-60대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인 생애사 프로젝트”와 유사한 과정으로 진행할 계획임. 생애사 인터뷰와 함께 가능한 인터뷰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사진 또는 영상 기록 등도 수집할 예정임. 생애사 기록에 대해서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진행하여, 향후 연구자, 활동가 등이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 인터뷰 참여자: 50명 내외, 초기 섭외 가능한 인터뷰 참여자를 직접 컨택, 향후 스노우볼로 인터뷰 참여자를 모집해 나갈 계획이며, 정체성 및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인터뷰 참여자를 확정할 예정임.

- 인터뷰 진행: 각 참여자 별로 2시간 내외의 인터뷰를 총 2회기로 진행

- 기록물: 성명, 지역 등 참여자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인터뷰 녹취록을 아카이브화

③ 결과 보고서 및 전시 - 프로젝트의 산출물로는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와 생애사 기록에 대한 전시를 계획하고 있음.

④ 향후 자료 활용 - 프로젝트 완료 후 수집된 생애사 기록물은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연구자, 활동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또한 해당 자료를 분석, 정리한 결과를 단행본으로 출판하는 등의 후속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임.

* 본 사업은 다음세대 공모 신청 중으로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의결 안건 4

2020년 예산 의결의 건

2020년 예산안

1) 예산안

(1) 수입

관		항	목	2019 년 결산	2020 년 예산
이월금 (8%)		이월금		12,998,412	11,761,809
후원수입 (75%)		정기회비후원금	CMS	97,920,770	103,800,000
			입금	230,000	300,000
		후원금	비정기후원	4,985,845	5,000,000
			특별후원	1,200,000	0
사업수입 (13%)	일반사업	판매	책, 자료, 물품	8,914,500	10,000,000
		강연		180,000	800,000
		대관, 인세		63,000	300,000
		참가비	참가비	915,000	1,000,000
	특별사업	공모사업	공모,프로젝트		
		기획/재정사업	기획사업	1,080,000	2,000,000
잡수입 (4%)		이자수입	이자수익	6,568	10,000
		기타 수입	기타(보증금)		5,000,000
			기타		
			임대료		6,000,000
환급		환급	환급	52,500	
합 계				128,546,595	145,971,809

(2) 지출

관	항	내역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운영비 76%	인건비		74,943,016	79,786,000
	관리비		28,011,890	28,270,800
	사무비		900,220	1,420,000
	물건비		1,414,270	1,300,000
	운영비 소계		105,269,396	110,776,800
사업비 15%	팀별사업 및 운영회의		2,736,150	5,500,000
	기획사업		2,485,440	4,500,000
	회원사업		2,133,970	4,200,000
	연대사업		2,092,090	2,300,000
	특별사업		1,553,000	1,000,000
	사업비 소계		11,000,650	22,500,000
기타 9%	예비비		144,740	495,009
	보증금/적립금		170,000	5,000,000
	환급		200,000	200,000
이월금			11,761,809	12,000,000
합 계			128,546,595	145,971,809

(3) 자산 – 보증금 20,000,000 원

2) 예산안 설명

(1) 수입

- 전체 예산 규모 : 중점활동, 교육 사업, 후원 배가 등 19 년에 비해 회원들과 함께 외부사업을 진행하는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예산 규모를 19 년 예산 대비 14%정도 증감함
- 회비, 정기 후원금 : 810 만원을 시작으로 월 평균 10 만원 증가를 목표로 함. 19 년 목표와 같음.
- 비정기 후원은 19 년 결산 수준에 맞춤.
- 후원사업, 지역퀴퍼 참가 등에 맞춰 기념품을 신규 제작할 예정. 그에 따라 판매금을 상향 조정.

- 프로젝트는 예산 반영은 하지 않았으나, 올해 공모할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어 항목은 남겨둠.
- 중점활동, 후원 배가 등 기획을 중심으로 후원 사업을 계획함에 따라 신규 편성 (19 년 결산 내역은 특별사업으로 서울 쿼터퍼레이드 공동분담금이 입금된 내역임)
- 8 층 사무실 명의를 성소수자부모모임으로 변경하면서 관리비 50 만원의 임대료 수입 발생

(2) 지출

- 반상근 1 인 상근 2 인 체제에서 상근 3 인 체제로 운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상승.
-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부모모임이 분담하는 임대료 50 만원을 고려하면 실제 운영비는 19 년과 비슷한 수준.
- 중점활동, 후원배가, 프로젝트 등 외부 기획 사업을 계획함에 따라 사업비 편성도 소폭 상승함. (19 년 예산 15,200,000 원) 19 년에는 내부 안정화에 집중하여 사업비 지출이 예산 대비 적었음.
- 8 층 사무실 명의 변경으로 돌려받은 보증금 5,000,000 원은 별도 적립하여 지출 내역에 반영함

(3) 지출 세부 예산

관	항	목	내역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운영비 76%	인건비	대표지원	대표지원비	2,250,000	2,200,000
		상근활동	기본급	43,736,000	51,900,000
		근속수당		600,000	1,190,000
		반상근		12,084,120	6,750,000
		복리후생비		3,240,000	4,320,000
			공익조합 동행	360,000	360,000
		상여금		2,750,000	2,750,000
		퇴직적립금		5,667,000	5,984,000
		퇴직금지출	중간정산	0	0
		기본급 소급지원	인건비 상승분 소급	462,000	132,000
		직책수당	사무국장	900,000	1,200,000
		세금	근로소득세 및 가산세, 종합소득세	264,230	0
		4대보험	단체부담총액	2,629,666	3,000,000
		인건비 소계			74,943,016

관리비	임차료		22,560,000	22,560,000
	관리비		1,440,000	1,440,000
	정수기		509,800	550,800
	전기		1,246,210	1,320,000
	복합기임대		1,080,000	1,080,000
	통신비	전화 인터넷 호스팅	1,175,880	1,320,000
	관리비 소계		28,011,890	28,270,800
사무비	발송	우편발송	27,820	100,000
	운반	짐운반	73,200	200,000
	출장	여비, 교통비	0	100,000
	홍보	메일링, 문자,리플렛	774,800	1,000,000
	지급수수료		24,400	20,000
	사무비 소계		900,220	1,420,000
물건비	비품비	비품, 수리	1,062,520	700,000
	소모품비		331,750	500,000
	자료구입비		20,000	100,000
	물건비 소계		1,414,270	1,300,000
운영비 소계			105,269,396	110,776,800

관	항	목	내역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사업비 15%	팀별사업 및 운영 회의	운영회의		600,450	800,000
		사무국		85,000	300,000
		교육국		229,470	600,000
		트랜스젠더 퀴어인권팀		171,700	600,000
		노동권팀		106,050	600,000
		에이즈팀		305,120	600,000
		웹진팀		59,800	0
		성평등위원회		47,000	600,000
		소모임		0	0
		워크샵 및 활동지원		355,460	600,000
		조정위원회		776,100	800,000
		소계		2,736,150	5,500,000

	기획사업	프로젝트		0	5,000,000
		기획활동		0	1,000,000
		육우당 추모		432,140	500,000
		축제-퍼레이드		1,153,300	1,500,000
		기념품 제작		900,000	1,500,000
		소계		2,485,440	9,500,000
	특별사업	서울퀴어문화축제	공동행진단	1,514,000	0
		소계		1,514,000	
	회원사업	디딤돌회원모임		377,980	600,000
		지역회원모임		214,500	600,000
		총회송년회		1,441,490	2,000,000
		회원교육		100,000	1,000,000
		소계		2,133,970	4,200,000
	연대사업	활동비		367,090	500,000
		분담금		1,230,000	1,000,000
		후원		495,000	800,000
		소계		2,092,090	2,300,000
	특별지원	상담지원		39,000	1,000,000
	사업비 소계			11,000,650	22,500,000
기타 1%	예비비		144,740	495,009	
	적립금(보증금,시제)		170,000	5,000,000	
	환급		200,000	200,000	
이월금 8%			11,761,809	12,000,000	
합계			128,546,595	150,971,809	

① 인건비 변동 사항

- 상근 3인 체제

- 2020년 최저임금 : 8,590 원 * 209 시간 = 1,795,310 원 /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 2019년 기본급 165 만원에서 2020년 기본급 168 만원으로 소폭 조정하여 수령액을 최저임금에 맞춤 (기본급 1,680,000 원 + 복리후생비 12 만 = 1,800,000 원 + 4 대보험 전액 단체 지원)

- 운영위원장이 반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하면서 대표지원비 25 만 → 10 만으로 조정

② 사업비

- 팀별 예산은 월 5 만원으로 회의비 명목으로 총 60 만 일률적으로 편성.
- 트랜스젠더퀴팀이 활동팀으로 편성되면서 예산 신설. 웹진기획팀 해산에 따라 예산 편성 없음
- 2019 년 조직개편에 따라 소모임은 회원들의 자조모임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 20 년에도 별도의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 단, 소모임을 편성 항목에서 삭제하지는 않았음
- 교육사업은 19 년과 동일하게 편성. 교육사업 확대에 따라 결산에 비해 높게 책정함
- 특별사업은 특별지원 항목으로 일백만원을 청구번호 2018-7, 2018-8 건 상담 지원 비용으로 이미 지출한 내역임 (20 년 1 월 10 일) - 19 년 결산 내역은 특별사업 중 비상체제 백서 항목임

3) 재정 운용 계획

- 19년에는 예산에 비해 사업비 지출이 매우 낮았다. 내부 안정화에 집중하여 사업수입이 전무한 상황에서 CMS수입 규모가 증가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이 고정지출에 육박하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재정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졌고 기구 및 활동팀 전반적으로도 사업비 지출에 소극적이었다.
- 한편, CMS 수입 규모가 17년 이전 규모로 축소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20년에는 사업 계획들이 수립됨에 따라 새로운 활동들이 늘어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를 염두하여 외부 프로젝트와 기획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다. 그러나 이는 현재 단체에서 확보한 금액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산 운용에 꼼꼼한 관리가 요구된다.
-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업 예산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단체 기구 및 활동팀 예산 등 정기 예산 배분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작년과 동일하게 맞추었다. CMS 수입 증가, 기획/재정사업의 진행으로 수입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작년과 같은 위기감을 해소하는 것이 1차 목표이다. 그래야만 각 기구 및 팀에서도 배분된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19년에 이어 2020년 또한 계획적이고 꼼꼼한 지출 계획이 필요한 해이다. 사업에 따르는 수입과 지출의 대비를 확인하고, 허투루 낭비되는 지출이 없어야 할 것이며, 예산 규모를 세심하게 살펴 세부적인 계획이 잘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 진행 시, 사무국 및 운영회의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운영회의에서 전반의 계획들을 꼼꼼히 점검하도록 한다.
- 수입/지출 내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매월 꾸준히 보고해야 한다. 온라인 공개 및 회원 보고 이전에 운영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의결 안건 5

정관 개정 의결의 건

정관 개정

1) 회의록 열람 관련 규정의 변경

회의록 열람에 대한 회원들의 권한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원안	개정안
제12조 (총회의 회의록)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총회의 회의록)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u>회원들이</u>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 (회의록) 운영회의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운영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 (회의록) 운영회의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운영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u>정회원과 후원회원의 요청 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u>

2) 회원 표기 관련 규정의 변경

2019 행성인 정기 회원총회에서 회원의 구분을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하는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기존 정관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을 수정하여 개정합니다. ‘회원, 후원회원’으로 표기된 부분은 ‘회원’으로 통일하여 수정합니다.

원안	개정안
제7조의 2 (정회원의 권리 정지) ③ 회비 미납을 사유로 권리가 정지된 정회원은 3개월 분의 회비 납부를 통해 회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제7조의 2 (정회원의 권리 정지) ③ 회비 미납을 사유로 권리가 정지된 정회원은 3개월 분의 회비 납부를 통해 <u>정회원</u> 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④ 사무국장은 행성인 회원, 후원회원들의 정기, 비정기 회비 등 재정을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회원, 후원회원들에게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④ 사무국장은 행성인 <u>회원</u> 들의 정기, 비정기 회비 등 재정을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u>회원</u> 들에게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한다.
제27조 (수입)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후원회원의 회비,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7조 (수입) 본회의 수입금은 <u>회원</u> 의 회비, 기타 수입으로 한다.

의결 안건 6

조정위원회 운영내규 개정 의결의 건

조정위원회 운영내규 개정

1) 제 7 조 (특별조정위원의 선임) 관련 조항 개정

조정위원의 결원 사유가 제척사유 발생에만 연유하지 않으므로 “제척사유 발생으로 인한”을 “제척사유나 기타 사유로 인한”으로 수정합니다.

원안	개정안
제 7 조 (특별조정위원의 선임) ① 다음 각호의 상황에서 조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개별 사건의 처리를 위한 특별조정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별 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조정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의 종결 보고서 작성까지로 한다. 1. 제 5 조의 조정위원의 제척사유 발생으로 인한 결원이 생긴 경우 2.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의 특성 상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조정위원이 필요한 경우 ② 조정위원의 사임 또는 해임으로 조정위원회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행정인은 조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특별조정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조정위원의 사임 또는 해임으로 선임된 조정위원의 임기는 기존 조정위원의 남은 임기까지로 한다.	제 7 조 (특별조정위원의 선임) ① 다음 각호의 상황에서 조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개별 사건의 처리를 위한 특별조정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별 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조정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의 종결 보고서 작성까지로 한다. 1. 제 5 조의 조정위원의 <u>제척사유나 기타 사유로 인한 결원이 생긴 경우</u> 2.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의 특성 상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조정위원이 필요한 경우 ② 조정위원의 사임 또는 해임으로 조정위원회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행정인은 조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특별조정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조정위원의 사임 또는 해임으로 선임된 조정위원의 임기는 기존 조정위원의 남은 임기까지로 한다.

2) 제 12 조 (조사의 방법) 조항 개정

조사 과정에 있어 진술서 외에 진행 과정에 따르는 전반의 소통에도 조사의 책임이 따르는 바, “서한답신 요청”을 추가합니다. 또 현행 법률 용어에 맞추어 내규 전반에 ”관계인”을 “참고인”으로 수정합니다.

원안	개정안
제 12 조 (조사의 방법)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및 관계단위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관계인 및 관계단위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청구된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의 조사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 2. 징계에 회부된 사안에 관하여 형사재판 결과 형이 확정된 경우 3. 연대단체 등 외부의 관련 기구에서 이미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가 진행된 경우	제 12 조 (조사의 방법)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u>참고인</u>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및 <u>서한 답신 요청</u> 2. 당사자, <u>참고인</u>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u>참고인</u>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청구된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의 조사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 2. 징계에 회부된 사안에 관하여 형사재판 결과 형이 확정된 경우 3. 연대단체 등 외부의 관련 기구에서 이미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가 진행된 경우

3) 제 15 조 (청구의 기각) 조항 개정

징계 사유의 근거가 불명확하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정관 제 8 조 제 2 항에 의거한”을 추가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원안	개정안
제 15 조 (청구의 기각) ①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결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결과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라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즉시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5 조 (청구의 기각) ①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결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결과 <u>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정관 제 8 조 제 2 항에 의거한</u>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라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즉시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제 21 조 (구제조치 처분 결정 등) 조항 내 오타자 수정

원안	개정안
제 21 조 (구제조치 처분 결정 등) ④ 제 1 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즉시 조정위원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1 조 (구제조치 처분 결정 등) ④ 제 1 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즉시 <u>조정위원회에</u> 통지하여야 한다.

5) 제 26 조 (2 차 피해의 방지) 조항 내 오타자 수정

원안	개정안
제 26 조 (2 차 피해의 방지) ③ 운영위는 2 차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6 조 (2 차 피해의 방지) ③ <u>조정위와</u> 운영위는 2 차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부칙 제 1 조 변경

기존에는 날짜를 적용하였으나, 매년 총회 때마다 개정해야 하는 관계로 부칙 효력 발생일을 총회 통과 시점으로 수정합니다. 총회 통과일은 자료집 최종 배포일로 보고 소급 적용의 날짜도 그에 따라 변경합니다.

7) 부칙 제 2 조 개정

“관례에 따른다”를 “관례를 참고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원안	개정안
제 1 조 본 규약은 2019 년 2 월 25 일부터 적용된다.	제 1 조 본 규약은 <u>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u>
제 2 조 본 규약은 2019 년 2 월 25 일 이전까지 총회, 운영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된 회원의 징계 사안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제 2 조 본 규약은 <u>총회 통과일</u> 이전까지 총회, 운영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된 회원의 징계 사안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제 3 조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 행성인 정관 및 인권단체의 관례에 따른다.	제 3 조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 <u>행성인 정관 및 인권단체의 관례를 참고할 수 있다.</u>

의결 안건 7

성폭력사건처리규약 개정 의결의 건

성폭력사건처리규약 개정

1) 제소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피해자를 지지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뜻을 명확히 전하기 위하여, 규약 전반에 “청구인” “피청구인” 용어를 “피해자” “가해자”로 변경합니다.

2) 법률 용어에 맞추어 규약 전반에 “관계인”을 “참고인”으로 수정합니다. 단, 19 조 (구제조치 처분 결정 등)에서는 “관계인”이 조사 대상을 지칭하는 “참고인”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에 변경하지 않습니다. (예: 제도 개선 등은 조사 대상이 아닌 단체의 권고 사항일 수 있음)

3) 제 1 조 (성폭력의 정의) 조항 내 윤문 수정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상대방의”를 “상대방과의”로 수정

“동의를 있다고 할 수 없음”을 “동의를 성립하지 않음”으로 수정

“지속적으로” 추가

4) 제 7 조 (성폭력 사건처리기구의 역할) 조항 개정

각 호의 배열에 따라 “4.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결정”을 “6.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기타 필요한 조치 결정”으로 수정하면서 순서 재배열

5) 제 13 조 (조사의 방법) 조항 개정

조사 과정에 있어 진술서 외에 진행 과정에 따르는 전반의 소통에도 조사의 책임이 따르는 바, “서한답신 요청”을 추가합니다.

6) 제 15 조 (신고의 기각) 조항 개정

징계 사유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정관 제 8 조 제 2 항에 의거한”을 추가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7) 제 25 조 (당사자의 권리) 조항 개정

사건의 당사자는 조사 과정에 임함에 있어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책임을 피하기 위한 진술 거부하는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이 조항은 불필요한 조항에 가깝습니다. 하여 이 조항을 삭제합니다.

8) 제 12 조 (사건의 조사와 처리) 조항 내 윤문 수정.

9) 제 26 조 (피해자의 보호) 조항 내 윤문

“사건의”를 “사건”으로 수정

각 호의 시작을 조정위로 통일

10) 부칙 개정

“관례에 따른다”를 “관례를 참고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기존에는 날짜를 적용하였으나, 매년 총회 때마다 개정해야 하는 관계로 부칙 효력 발생일을 총회 통과 시점으로 수정합니다. 총회 통과일은 자료집 최종 배포일로 보고 소급 적용의 날짜도 그에 따라 변경합니다

원안	개정안
행성인 성폭력사건처리규약 (2019) 제 1 조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불쾌한 성적인 언사, 몸짓, 신체적 접촉, 추행, 강간 등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행위를 말한다. 본 규약이 다루는 성폭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상대방의 적극적 합의 없이 이루어진 성적 행위. 합의의 유무를 판단할	행성인 성폭력사건처리규약 (2020) 제 1 조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불쾌한 성적인 언사, 몸짓, 신체적 접촉, 추행, 강간 등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행위를 말한다. 본 규약이 다루는 성폭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u>상대방과의</u> 적극적 합의 없이 이루어진 성적 행위. 합의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 개인이 그 행위의 성격을 이해할 수 없거나, 정황상 의식적인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적 행위에 대해 동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음을 의미함 2.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인 언동 및 요구를 하고 그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차별 대우하는 행위 3. 물리적인 공간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폭력 4. 일방적으로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제 2 조 (규약의 적용범위) ① 본 규약은 행성인의 활동 상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처리 절차에 적용된다. 단, 신고된 사건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모두 사건 발생 당시 비회원일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회원가입을 할 시 본 규약에 따른 사건 처리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제 7 조 (성폭력 사건처리기구의 역할) 행성인 조정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건의 조사 및 중재 2. 가해자 징계 결정 및 단체에 대한 권고	때에는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야 한다. <u>아. 개인이 그 행위의 성격을 이해할 수 없거나, 정황상 의식적인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적 행위에 대해 동의가 성립하지 않음</u> 2.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인 언동 및 요구를 하고 그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차별 대우하는 행위 3. 물리적인 공간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폭력 4. <u>일방적으로 만남이나 교제를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u> 제 2 조 (규약의 적용범위) ① 본 규약은 행성인의 활동 상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처리 절차에 적용된다. 단, 신고된 사건에서 <u>피해자와 가해자</u>가 모두 사건 발생 당시 비회원일 경우에는 가해자가 회원가입을 할 시 본 규약에 따른 사건 처리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제 7 조 (성폭력 사건처리기구의 역할) 행성인 조정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건의 조사 및 중재 2. 가해자 징계 결정 및 단체에 대한 권고
--	---

3. 피해자 보호 4.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결정 5. 이행사항의 점검 6. 당사자에게 공지 제 12 조 (사건의 조사와 처리) 행성인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며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 13 조 (조사의 방법)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단위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단위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자 보호 4. <u>이행사항의 점검</u> 5. <u>당사자에게 공지</u> 6. <u>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기타 필요한 조치 결정</u> 제 12 조 (사건의 조사와 처리) 행성인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며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u>4. 조정위원회</u>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 13 조 (조사의 방법)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참고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u>참고인에</u>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및 <u>서한 답신 요청</u> 2. 당사자, 참고인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참고인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

제 15 조 (신고의 기각) ①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즉시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 조 (신고의 철회) 신고인은 조정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제 19 조 (구제조치 처분 결정 등) ① 조정위원회는 조사 결과, 성폭력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관계자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사 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자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 1 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즉시 조정위원회에게 통지하여야	제 15 조 (신고의 기각) ① 조정위원회는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u>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u> 정관 제 8 조 제 2 항에 의거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즉시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 조 (신고의 철회) <u>피해자</u>는 조정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제 19 조 (구제조치 처분 결정 등) ① 조정위원회는 조사 결과, 성폭력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u>관계인</u>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사 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u>관계인</u>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 1 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즉시 조정위원회에게 통지하여야
---	---

한다. 제 21 조 (이의절차) ① 조정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결정문을 통지 받은 후 50 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조사를 실시한다. ③ 재조사 절차는 제 12 조와 제 13 조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④ 제 1 항의 이의신청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1 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 25 조 (당사자의 권리) ①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26 조 (청구인의 보호) 청구인은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 부칙 제 1 조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경우 행정인 정관과 내부규약, 기타 인권단체의 관례를 따른다.	한다. 제 21 조 (이의절차) ① 조정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결정문을 통지 받은 후 50 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조사를 실시한다. ③ 재조사 절차는 제 12 조와 제 13 조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④ 제 1 항의 이의신청은 <u>피해자와 가해자</u> 모두 1 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 25 조 (당사자의 권리) ①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 <u>삭제</u> 제 26 조 (피해자의 보호) 피해자는 <u>사건</u>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 부칙 제 1 조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경우 행정인 정관과 내부규약, 기타 인권단체의 관례를 <u>참고</u>할 수 있다.
---	--

제 2 조 본 규약은 2019 년 3 월 05 일부터 적용된다.	제 2 조 본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u>적용된다.</u>
참조목록 1. 고려대학교 표준 반성폭력 자치규약 2. 청소년유니온 평등·존중·환대의 공동체를 위한 조직문화 해설집 3. BIYN(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성폭력 사건처리 규정 4. 매듭 반성폭력 규약 5. 인권운동사랑방 성차별금지 및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내규 6. 단 하나의 기준, 적극적 합의 7. 공생의 조건 자료집	참조목록 1. 고려대학교 표준 반성폭력 자치규약 2. 청소년유니온 평등·존중·환대의 공동체를 위한 조직문화 해설집 3. BIYN(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성폭력 사건처리 규정 4. 매듭 반성폭력 규약 5. 인권운동사랑방 성차별금지 및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내규 6. 단 하나의 기준, 적극적 합의 7. 공생의 조건 자료집

보고 안건 3

운영내규 개정 보고

운영내규 개정

1) 소모임 구성 관련 규정의 변경

소모임의 활동보고를 년4회에서 년2회로 축소하여 활동보고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합니다.

원안	개정안
8. 회원소모임 2) 구성: 회원소모임은 년1회 등록기간에 정기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회원소모임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모임 장을 포함한 5인이상의 정회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회원소모임은 년4회 정기적으로 활동보고를 해야 한다.	8. 회원소모임 2) 구성: 회원소모임은 <u>년1회</u> 등록기간에 정기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회원소모임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모임 장을 포함한 5인이상의 정회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회원소모임은 <u>년2회</u> 정기적으로 활동보고를 해야 한다.

2) 회원 표기 관련 규정의 변경

2019 행성인 정기 회원총회에서 회원의 구분을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하는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기존 정관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을 수정하여 개정합니다. ‘회원, 후원회원’으로 표기된 부분은 ‘회원’으로 통일하여 수정합니다.

원안	개정안
3. 운영위원장 1) 자격: 운영위원장은 행성인의 모든 활동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원칙에 동의하고 3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과 1년 이상 운영위원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3. 운영위원장 1) 자격: 운영위원장은 행성인의 모든 활동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원칙에 동의하고 3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과 1년 이상 운영위원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20명 이상의 회원들의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회원, 후원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하고 사업추진력이 있어야 하며 통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역할: - 회원, 후원회원들의 동정을 살피고 회비납부 여부를 확인한다. 4) 개인정보보호: 운영위원장은 회원, 후원회원들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용 등을 소중히 여기고 절대 타인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회원정보보호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4. 운영위원 2) 역할: - 운영위원은 회원, 후원회원들을 대표하며 회원, 후원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여 운영위원회에 적극 제안할 수 있다. 월 1회 이상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행정인의 모든 활동에 대해 운영위원장과 함께 토론하고 결정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운영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즉시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3) 개인정보보호: 운영위원은 회원, 후원회원들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용 등을 소중히 여기고 절대 타인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회원정보보호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한다. 20명 이상의 회원들의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u>회원들의</u>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하고 사업추진력이 있어야 하며 통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역할: - <u>회원들의</u> 동정을 살피고 회비납부 여부를 확인한다. 4) 개인정보보호: 운영위원장은 <u>회원들의</u> 개인정보와 상담내용 등을 소중히 여기고 절대 타인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u>회원정보보호</u>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4. 운영위원 2) 역할: - 운영위원은 <u>회원들을</u> 대표하며 <u>회원들의</u>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여 운영위원회에 적극 제안할 수 있다. 월 1회 이상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행정인의 모든 활동에 대해 운영위원장과 함께 토론하고 결정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운영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즉시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3) 개인정보보호: 운영위원은 <u>회원들의</u> 개인정보와 상담내용 등을 소중히 여기고 절대 타인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u>회원정보보호</u>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	---

5. 상임활동가 (전임, 반상근) 2) 역할: - 회원, 후원회원들의 동정파악하고 회비납부현황 체크한다. 3) 개인정보보호: 상임활동가는 회원, 후원회원들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용 등을 소중히 여기고 절대 타인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회원정보보호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6. 사무국장 2) 역할: 사무국 전반을 총괄하며, 사무국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회원, 후원회원들의 정기, 비정기 회비를 관리하며 적절한 수입 및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원, 후원회원들에게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3) 개인정보보호: 사무국장은 회원, 후원회원들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용 등을 소중히 여기고 절대 타인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회원정보보호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8. 회원소모임 1) 자격: 행성인 활동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원 및 후원회원 자격이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회원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5. 상임활동가 (전임, 반상근) 2) 역할: - <u>회원들의</u> 동정파악하고 회비납부현황 체크한다. 3) 개인정보보호: 상임활동가는 <u>회원들의</u> 개인정보와 상담내용 등을 소중히 여기고 절대 타인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회원정보보호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6. 사무국장 2) 역할: 사무국 전반을 총괄하며, 사무국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u>회원들의</u> 정기, 비정기 회비를 관리하며 적절한 수입 및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월 1회 정기적으로 <u>회원들에게</u>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3) 개인정보보호: 사무국장은 <u>회원들의</u> 개인정보와 상담내용 등을 소중히 여기고 절대 타인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회원정보보호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8. 회원소모임 1) 자격: 행성인 활동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u>회원 자격이</u>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회원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	---

3) 기타

‘상근일지’와 ‘상담일지’는 분명히 다른 업무로, 이를 명확히 표기하는 방향으로 개정합니다.

원안	개정안
5. 상임활동가 (전임, 반상근) 2) 역할: - 사무실 기본업무 (사무실 정리, 상담, 방문자 접대, 상근일지(상담일지) 작성 등)	5. 상임활동가 (전임, 반상근) 2) 역할: - 사무실 기본업무 (사무실 정리, 상담, 방문자 접대, <u>상근일지</u>, <u>상담일지</u> 작성 등)

보고 안건 4

2020년 소모임 등록 현황 보고

1) 책읽기 소모임 완독

책읽기 소모임은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뜻이 있어 온 행성인 회원들이 더 풍성하게 나누는 통로로 고안되었습니다. 사안과 이슈 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만남을 나누면서 행성인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에 책은 매우 좋은 도구이며, 우리를 더욱 더 가깝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관심 있는 분의 참가를 바랍니다.

소모임장: 조나단

문의: 행성인 이메일_ lgbtaction@gmail.com

기타 안건

부록

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정관 및 내규 (2019. 02. 23 개정)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정관 (2019. 02. 23)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이름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이하 ‘행성인’)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가정, 학교, 직장, 사회 등에서 직, 간접적으로 벌어지는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어하고 대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며, 모든 영역에서 성소수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성소수자 차별 없는 세상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원칙)

1. 우리는 이 땅의 권력구조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인권단체로서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양성애자 그리고 모든 유형의 성적 불평등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다.
2.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이 부당한 억압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 전면적으로 대응한다.
3. 우리는 노동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난민, 아동, 청소년, 빈민 등 억압과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4. 우리는 성별, 나이, 사회적 지위 등의 모든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기 위해 노력한다.
5. 우리는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 간의 연대는 물론 국제 연대를 강화하여 전 세계 성소수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6. 우리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부의 모든 유형의 소외와 계급, 계층, 성별에 의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7. 우리는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비성소수자들과도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활동한다.

8. 우리는 개인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며 커밍아웃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한다.
9. 우리는 다양한 성소수자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지지한다.
10. 우리는 개인의 성적 자율성을 존중한다.

제4조 (사업)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 청소년 성소수자, 성소수자 노동권, HIV/AIDS 인권, 가족구성권, 군 인권 등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2. 성소수자 혐오표현 및 차별선동 대응
3. 국내 성소수자인권단체 및 국제연대,
4. 여성, 장애, 이주, 빈곤, 비정규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간 연대활동
6. 성소수자커뮤니티 내 인권교육 및 캠페인
7. 성소수자 인권상담 및 위기대응
8. 성소수자 커뮤니티 문화사업

제5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 ① 행성인 목적과 원칙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상관없이 본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②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되며, 운영회의가 정한 방법에 따라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으로 가입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모든 정회원과 후원회원은 행성인이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하고 단체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② 정회원은 사업 전반에 걸친 안건에 대한 발의권 및 총회의결권, 운영위원장과 운영회원 등 임원

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회원은 본회의 정관과 내규를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회원은 정기적으로 월 10,000원 이상의 약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경제 사정에 따라 10,000원 미만의 회비를 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회원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후원회원은 본인이 약정한 후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정회원은 행성인 회원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의 행성인 정기모임에 참여해야 한다.

제7조의 2 (정회원의 권리 정지)

① 행성인 회원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정회원은 총회의결권과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정회원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결권과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을 거친 이후 운영회의의 의결로 자격 정지를 일정기간 보류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의 회비 미납

2. 총회 개최 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 간 정기모임 불참

③ 회비 미납을 사유로 권리가 정지된 정회원은 3개월 분의 회비 납부를 통해 회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탈퇴, 징계, 제명)

① 회원은 탈퇴를 원할 경우 탈퇴사유와 함께 서면, 인터넷, 전화 등으로 탈퇴의 의사를 사무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절차를 통해 징계 또는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 회원의 징계 및 제명의 사유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이와 관련한 운영내규를 따른다.

1. 제3조에 규정된 행성인 활동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

2. 타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

3.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 행위

4. 기타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제3장 총회

제9조 (총회의 구성)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총회는 행성인의 정회원을 구성원으로 하며, 후원회원은 참관인으로 참석 가능하다.
- ③ 총회의 의장은 운영위원장이 한다.
-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개최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 ⑤ 총회의 공지는 총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7일전에 해야 하며 홈페이지와 유, 무선 연락을 이용해 공지한다. 긴급하게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최소 3일 전에 공지해야 한다.
- ⑥ 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공지와 함께 총회의결권을 가진 회원들에게 주요 의결 안건을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 공유해야 한다.

제10조 (의결정족수)

- ① 총회의 정족수는 의결권을 가진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총회의 의결은 의결권을 가진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총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될 경우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은 운영회의에 서면, 메일, 팩스, 구두로 불참의사를 밝히고 다른 정회원에게 권리의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 인준
2. 회기별 사업보고 및 결정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회칙 재, 개정
5. 사업계획의 승인
6. 주요 활동방향 결정
7. 기타 중요사항

제12조 (총회의 회의록)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장 임원

제13조 (임원의 구성) 행성인은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운영위원장 1인 이상 2인 이하
2.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10인 이하
3. 자문위원회
4. 조정위원 3인 이상
5. 사무국장 및 감사 각 1인

제14조 (임원의 선임)

- ①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조정위원, 사무국장 및 감사는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한다.
-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 ③ 자문위원회의 제반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 및 활동원칙에 위배되는 행위
2.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타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
4. 기타 임원으로서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행위

제16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총회 시 회원들로부터 활동을 인준받아 중임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할 운영위원을 선임한다. 선임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 ① 운영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운영회의와 각 기구의 활동을 총괄하며 본회의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② 운영위원은 운영회의를 통하여 본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운영회의 또는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조정위원회는 단체 및 그 구성원과 관련해 징계사유가 발생하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진상 조사, 조정, 징계할 수 있다.
- ④ 사무국장은 행성인 회원, 후원회원들의 정기, 비정기 회비 등 재정을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회원, 후원회원들에게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한다.
- ⑤ 감사는 일반회계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후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5장 운영회의

제18조 (운영회의의 구성)

- ①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운영위원의 자격)

- ① 운영위원은 행성인 활동원칙에 동의하고 1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헌신적으로 행성인 활동을 이끌어갈 사람이어야 한다. 단, 책임자가 없을 경우 운영위원장의 추천을 통해 운영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회의의 소집)

- ① 운영회의는 정기운영회의 및 임시운영회의로 구분하며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운영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운영회의는 운영위원장 또는 재적운영위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21조 (의결정족수) 운영회의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회의록) 운영회의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운영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의 1 (활동 기구의 구성)

- ① 본회의 활동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 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활동기구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구성하고 해소한다.
- ③ 활동기구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는 각 활동기구를 담당하는 운영위원을 둔다.

제6장 조정위원회

제23조 (조정위원회의 목적)

조정위원회는 단체 및 그 구성원과 관련해 징계사유가 발생하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진상조사, 조정, 징계할 권한을 가진 기구이다.

제24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 ① 조정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조정위원장과 조정위원은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 ② 조정위원은 운영위원을 겸임하지 않는다.
- ③ 조정위원 중 1인이 분쟁의 당사자일 경우, 운영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을 선출한다.
- ④ 조정위원회에 관련한 제반사항은 운영내규로 정한다.

제7장 사무국

제25조 (사무국의 역할)

- ①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은 본회의 회원조직, 재정 등 일상활동 및 운영회의 결정사항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한다.

③ 사무국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무국장을 둔다. 사무국장은 상임활동가 중 1인으로 한다.

제26조 (사무국의 구성)

① 사무국은 운영위원장, 사무국장 및 상임활동가 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운영위원이 참여할 수 있다.

② 사무국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운영회의 결의로 별도의 내규를 두어 정한다.

제8장 회계 및 재정

제27조 (수입)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후원회원의 회비,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8조 (출자 및 용자) 행성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용자를 받을 수 있다.

제29조 (관리)

본회의 재산은 사무국장이 관리하고 재산변동과 재산관리의 중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사무국장이 부재할 경우 운영회의에서 결정하고 관리한다.

제30조 (회계연도 및 보고)

①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② 회계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9장 보칙

제31조 (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32조 (해산 및 합병) 본회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 (잔여재산의 귀속) 단체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게 귀속한다. 단 귀속단체는 정기 또는 임시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제34조 (운영규정) 이 정관규정 이외에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회의 의결로 별도의 내규를 두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시기)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세칙) 본 정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통상의 관례를 따르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 세칙에 의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운영내규 (2019. 02. 23)

1. 운영위원회

- 1) 역할: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하 행성인)의 모든 활동을 기획하고 점검하며 실행에 옮긴다.
- 2) 구성: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은 팀장을 포함해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회원들은 자유롭게 참관하고 회의안건을 제안할 수 있지만 결정 권한은 제한한다.
- 3) 회의개최: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회원들의 자유로운 참관을 위해 최소 3일 전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개최일을 공지한다. 운영위원장은 현안에 따라 정기회의를 더 소집할 수 있다.

2. 사무국

- 1) 역할: 행성인의 회원조직, 재정 등의 일상 활동 및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한다.
- 2) 구성: 사무국은 운영위원장, 상임활동가 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운영회원이 참여할 수 있다.

3. 운영위원장

- 1) 자격: 운영위원장은 행성인의 모든 활동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원칙에 동의하고 3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과 1년 이상 운영위원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20명 이상의 회원들의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회원, 후원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하고 사업추진력이 있어야 하며 통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2) 역할:

- 행성인을 대표하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권한을 갖는다.
- 회원, 후원회원들의 동정을 살피고 회비납부 여부를 확인한다.
- 재정 입출금을 통제할 권한을 갖는다.
- 팀활동, 회원모임, 연대활동, 현안대응 등을 총괄한다.
- 사무국장 및 회계감사, 상임활동가(전임, 반상근)를 선임할 권한을 갖는다.

3) 임기: 임기는 1년이며 정기총회 시 회원들로부터 인준받는다.

4) 개인정보보호: 운영위원장은 회원, 후원회원들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용 등을 소중히 여기고 절대 타인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회원정보보호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5) 활동비: 상근 여부와 상관없이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4. 운영위원

1) 자격: 운영위원은 행성인 활동원칙에 동의하고 1년 이상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헌신적으로 행성인 활동을 이끌어 갈 사람이어야 한다.

2) 역할:

- 운영위원은 회원, 후원회원들을 대표하며 회원, 후원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여 운영위원회에 적극 제안할 수 있다. 월 1회 이상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행성인의 모든 활동에 대해 운영위원장과 함께 토론하고 결정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운영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운영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할 운영위원을 선임할 권한을 갖는다.

3) 개인정보보호: 운영위원은 회원, 후원회원들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용 등을 소중히 여기고 절대 타인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회원정보보호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4) 임기: 임기는 1년이며 정기총회 시 회원들로부터 인준받는다.

5. 상임활동가 (전임, 반상근)

1) 자격: 행성인 활동원칙에 동의하는 회원으로 운영위원장, 운영위원들과 함께 헌신적으로 행성인 활동을 이끌 사람이어야 한다.

2) 역할:

- 사무실 기본업무 (사무실 정리, 상담, 방문자 접대, 상근일지(상담일지) 작성 등)
- 회원, 후원회원들의 동정파악하고 회비납부현황 체크한다.
- 행성인이 활동하는 각종 현안대응
- 기타

3) 개인정보보호: 상임활동가는 회원, 후원회원들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용 등을 소중히 여기고 절대 타인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회원정보보호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4) 임면절차: 운영위원장이 선임 및 해임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 시 회원들로부터 인준 및 해임안을 승인받는다.

5) 상임활동가는 정기총회 인준 후 상근계약서를 체결하고 상임활동가 처우 규정에 따라 활동한다.

6. 사무국장

1) 자격: 상임활동가 중 1인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사무국장은 사무국 전반을 총괄하며, 투명하고 철저하게 재정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신속히 재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2) 역할: 사무국 전반을 총괄하며, 사무국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회원, 후원회원들의 정기, 비 정기 회비를 관리하며 적절한 수입 및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원, 후원회원들에게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3) 개인정보보호: 사무국장은 회원, 후원회원들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용 등을 소중히 여기고 절대 타

인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회원정보보호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4) 임기: 임기는 1년이고 운영위원장이 선임하며 정기총회 시 활동을 인준받는다.

7. 활동기구

1) 자격: 행성인 활동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회원 자격이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활동기구에 참여할 수 있다.

2) 구성: 활동기구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구성된다. 활동기구는 운영위원회마다 활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각 활동기구 간의 원활한 소통과 의사결정을 위해 각 활동팀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을 둔다.

3) 활동비 지원: 활동기구는 총회에서 결정된 예산안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4) 해소: 활동기구의 해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

8. 회원소모임

1) 자격: 행성인 활동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원 및 후원회원 자격이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회원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2) 구성: 회원소모임은 년1회 등록기간에 정기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회원소모임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모임 장을 포함한 5인이상의 정회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회원소모임은 년4회 정기적으로 활동보고를 해야 한다.

3) 활동비 지원: 운영위원회로부터 인준받은 소모임은 총회에 따른 예산안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4) 해소: 회원소모임 정기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소모임은 해소된 것으로 본다.

9. 기타

1) 외부강연비 및 글 청탁 원고료 분배

- 운영위원장과 상임활동가는 행성인 활동으로서 10만원을 초과하는 외부강연비를 수령 받은 경우 초과분의 50퍼센트를 단체에 후원한다.

행성인 운영내규는 정기 운영위원회를 통해 수정할 수 있고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조정위원회 운영내규 (2019. 02. 23)

제 1조 (목적) 본 내규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조정위원회의 역할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규약의 적용범위) ① 본 내규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정관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회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시 이에 대한 진상조사, 조정, 징계 절차에 적용된다.

② 본 내규는 단체의 운영과 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분쟁조정절차에 적용된다.

③ 성폭력 사건의 경우 행성인 성폭력사건처리규약이 본 내규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 3조 (조정위원회의 역할) 조정위원회는 행성인 활동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회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기타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분쟁 사안을 조정한다.

제 4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행성인은 조정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조정위원을 둔다.

② 조정위원은 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결정으로 선임한다.

③ 조정위원은 운영위원을 겸임하지 않는다.

제 5조 (조정위원의 제척) 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조정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조정위원이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의 당사자, 대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2. 개별 조정위원의 담당 사건의 숫자가 3건을 초과한 경우
3. 기타 사건의 공정한 조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제 6조 (조정위원의 회피) 조정위원은 제5조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제 7조 (특별조정위원의 선임) ① 다음 각 호의 상황에서 조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개별 사건의 처리를 위한 특별조정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별 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 조정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의 종결 보고서 작성까지로 한다.

1. 제5조의 조정위원의 제척사유 발생으로 인한 결원이 생긴 경우
2.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의 특성 상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조정위원이 필요한 경우

② 조정위원의 사임 또는 해임으로 조정위원회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행정인은 조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특별조정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조정위원의 사임 또는 해임으로 선임된 조정위원의 임기는 기존 조정위원의 남은 임기까지로 한다.

제 8조 (청구) ① 정관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회원의 징계사유 및 단체 내 분쟁 발생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라도 조정위원회에 징계의 결정 또는 분쟁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발생을 인지한 경우 직권으로 이를 다룰 수 있다.

제 9조 (청구의 각하)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피청구인이 회원이 아닌 경우. 단,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탈퇴한 회원에 대해서는 청구를 각하하지 않는다.
2. 정관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회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청구를 각하한 경우 즉시 청구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조 (임시조치) 조정위원회는 징계의 결정 또는 분쟁의 조정을 청구 받은 이후 다음 각 호의 임시조치를 구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사건에 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청구인, 회원, 사업 담당자, 기타 구성원 등에게 위의 각 호의 조치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
2. 온/오프라인 공동활동공간으로부터의 격리 등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공간분리조치

3. 피청구인이 단체 내에서 맡고 있었던 역할 및 업무의 일시적 중단
4. 그 밖에 피해자, 청구인,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11조 (사건의 조사와 처리) 행정인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며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1. 조정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조정위원회는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5. 조정위원회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피치 못할 사정의 경우 신고인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6. 조정위원회는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즉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7. 조정위원회는 사건 처리의 경과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 12조 (조사의 방법)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단위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단위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청구된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의 조사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
2. 징계에 회부된 사안에 관하여 형사재판 결과 형이 확정된 경우
3. 연대단체 등 외부의 관련 기구에서 이미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가 진행된 경우

제 13조 (절차의 중지)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청구된 사건의 절차진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징계가 청구된 사건이 형사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2. 연대단체 등 외부의 관련 기구에서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3. 분쟁조정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제 14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조정위원이 출석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 전원의 합의로 결정한다.

제 15조 (청구의 기각) ①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결과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즉시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조 (분쟁조정절차)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양 당사자에게 적절한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제21조 제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정위원회가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 17조 (당사자 간 해결) ① 양 당사자는 피해 회복 방안을 서로 협의하여 조정위원회에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의 청구를 확인한 때에는 제21조 제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 18조 (청구의 철회) 청구인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언제든지 청구를 철회할 수 있다.

제 19조 (징계의 결정) ① 조정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징계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제1호 제명의 경우 조정위원회는 이의신청 기간의 완료 후 회원 제명의 건을 총회의 안건으로 발의할 수 있으며 제명의 결정은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1. 제명
2. 2년 이하의 직위해제 또는 활동중지
3.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 (성폭력, 비폭력, 인권교육 등)
4. 사과문 작성
5. 경고

② 조정위원회는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징계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피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징계수위의 결정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2.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
3. 누구라도 조정위원회의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제 20조 (제명의 의결) ① 제명의 결정은 총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소집 및 진행절차에 관련한 사항은 정관의 총회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 21조 (구제조치 처분 결정 등) ① 조정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청구인과 관계자에게 적절한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자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임원 또는 회원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시행
2. 조직문화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자문
3.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4. 특별감사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

도 즉시 조정위원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조 (이의절차) ① 조정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결정문을 통지 받은 후 5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조사를 실시한다.

③ 재조사 절차는 제11조와 제1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이의신청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 23조 (보고서의 작성) 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이행이 완료되면 조정위원회는 내부용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24조 (제명된 회원의 재가입절차) ① 조정위원회를 통해 제명된 회원은 제명 결정 이후 5년동안 행성인에 가입할 수 없다.

② 제명 결정 이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재가입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명된 회원의 재가입 심사는 조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별도의 심사기구를 꾸려 진행한다.

③ 재가입 심사를 청구한 사람은 재가입 이유와 징계사유와 관련한 자신의 변화 등을 소명하여야 한다.

④ 청구된 재가입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기구는 사건 당시 피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심사기구의 결정으로 재가입한 회원은 2년 동안 임원 및 팀장, 소모임장의 역할을 맡을 수 없다.

제 25조 (사건의 공개 범위 등) ①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② 사건의 결정사항은 회원 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③ 청구인은 조정위원회에 사건의 공개 범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청구인과 협의하여 공개할 내용과 형식, 공개 범위를 결정한다.

제 26조 (2차 피해의 방지) ① 2차피해라 함은 피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이외의 자가 언어폭력, 정신적 협박, 물리적 강압, 집단적 따돌림, 업무상 괴롭힘, 청구인 신변공개,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행동 및 성격 등을 문제 삼는 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인의 피해상황을 말한다.

② 조정위는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과 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운영위는 2차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모든 회원은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27조 (당사자의 권리) ①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28조 (청구인의 보호) 청구인은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 29조 (비밀 유지) ① 조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청구인과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조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 30조 (불이익의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제 1조 본 규약은 2019년 3월 5일부터 적용된다.

제 2조 본 규약은 2019년 3월 5일 이전까지 총회, 운영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된 회원의 징계 사안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제 3조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 행성인 정관 및 인권단체의 관례에 따른다.

성폭력사건처리규약 (2019. 02. 23)

제 1조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불쾌한 성적인 언사, 몸짓, 신체적 접촉, 추행, 강간 등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행위를 말한다. 본 규약이 다루는 성폭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상대방의 적극적 합의 없이 이루어진 성적 행위. 합의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가. 성적 행위에 대하여 자유롭게 동의하여야 함.
 - 나. 언어적 또는 물리적 저항이 없는 것은 동의라고 볼 수 없음.
 - 다. 위협 또는 힘의 사용에 굴복한 것은 동의라고 볼 수 없음
 - 라. 상대방의 옷차림은 동의의 의사 표현이 아님
 - 마. 과거의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는 미래의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가 아님
 - 바. 한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하기로 동의한 것은 다른 사람 과 성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아님
 - 사. 개인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 아. 개인이 그 행위의 성격을 이해할 수 없거나, 정황상 의식적인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적 행위에 대해 동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음을 의미함
2.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인 언동 및 요구를 하고 그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차별 대우하는 행위
3. 물리적인 공간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폭력
4. 일방적으로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제 2조 (규약의 적용범위) ① 본 규약은 행성인의 활동 상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처리 절차에 적용된다. 단, 신고된 사건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모두 사건 발생 당시 비회원일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회원가입을 할 시 본 규약에 따른 사건 처리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② 행성인 활동의 외부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청구인이 사건 발생 당시 행성인의 임원, 팀장, 소모임장의 역할을 맡고 있었을 때에 한하여 본 규약을 적용한다.

제 3조 (성폭력사건처리 기구의 구성) 본 규약의 정의에 따른 성폭력 사건은 행성인 조정위원회가 본 규약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 처리한다.

제 4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5조 (조정위원의 제척) 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조정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조정위원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
2. 조정위원이 사건 당사자와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는 경우
3. 조정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기타 사건의 공정한 조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제 6조 (조정위원의 회피) 조정위원은 제5조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제 7조 (성폭력 사건처리기구의 역할) 행성인 조정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건의 조사 및 중재
2. 가해자 징계 결정 및 단체에 대한 권고
3. 피해자 보호
4.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결정
5. 이행사항의 점검
6. 당사자에게 공지

제 8조 (의무와 태도) 행성인 조정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원칙과 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사건처리 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피해자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피해자 관점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사건의 조사와 결정 권한을 청구인에게 이관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청구인의 구체적인 요청이나 필요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공론화’ 나 ‘공식적 해결’ 만을 올바른 해결로 생각하지 않는다.
4. 충분한 조사 없이 피청구인의 탈퇴, 제명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제 9조 (신고) ①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가 사건 발생을 인지한 경우 제1항의 신고 없이 직권으로 사건을 다룰 수 있다.

제 10조 (신고의 각하)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1.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신고를 각하한 경우 즉시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조 (임시조치)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신고를 받은 이후 다음 각 호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사건에 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청구인, 회원, 사업 담당자, 기타 구성원 등에게 위의 각 호의 조치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
2. 온/오프라인 공동활동공간으로부터의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3. 그 밖에 피해자, 청구인,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12조 (사건의 조사와 처리) 행정인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며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1. 조정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조정위원회는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5. 조정위원회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피치 못할 사정의 경우 신고인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6. 조정위원회는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즉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7. 조정위원회는 사건 처리의 경과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 13조 (조사의 방법)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단위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단위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제 14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조정위원이 출석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 전원의 합의로 결정한다.

제 15조 (신고의 기각) ①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즉시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조 (당사자 간 해결) ① 양 당사자는 피해 회복 방안을 서로 협의하여 조정위원회에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의 청구를 확인한 때에는 제19조 제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 17조 (분쟁조정절차)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양 당사자에게 적절한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제19조 제 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조사는 정지된다.

④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정위원회가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 18조 (신고의 철회) 신고인은 조정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제 19조 (구제조치 처분 결정 등) ① 조정위원회는 조사 결과, 성폭력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관계자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사 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자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즉시 조정위원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조 (징계)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단, 가해자가 운영위원일 경우 조정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1. 조정위원회의 조사 결과 당사자에게 정관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가 임시조치와 구제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4.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
5. 누구라도 조정위원회의 조사와 구제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제 21조 (이의절차) ① 조정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결정문을 통지 받은 후 5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조정위원회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조사를 실시한다.
- ③ 재조사 절차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 ④ 제1항의 이의신청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 22조 (보고서의 작성) 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 이행이 완료되면 조정위원회는 내부용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 23조 (사건의 공개 범위 등) ①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사건의 결정사항은 회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청구인은 조정위원회에 사건의 공개 범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청구인과 협의하여 공개할 내용과 형식, 공개 범위를 결정한다.

- 제 24조 (2차 피해의 방지) ① 2차피해라 함은 피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이외의 자가 언어폭력, 정신적 협박, 물리적 강압, 집단적 따돌림, 업무상 괴롭힘, 청구인 신변공개 사건과 관련 없는 과거 행동 및 성격 등을 문제 삼는 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인의 피해상황을 말한다.
- ② 조정위는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과 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운영위는 2차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모든 회원은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제 25조 (당사자의 권리) ①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 ②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26조 (청구인의 보호) 청구인은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 27조 (비밀 유지) ① 조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당사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조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 28조 (불이익의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 29조 (후속조치) 운영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1. 성폭력 예방 교육시행
2. 성평등 교육프로그램 시행
3. 조직문화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자문
4.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 부칙

제 1 조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경우 행정인 정관과 내부규약, 기타 인권단체의 관례를 따른다.

제 2 조 본 규약은 2019년 3월 5일부터 적용된다.

참조목록

1. 고려대학교 표준 반성폭력 자치규약
2. 청소년유니온 평등·존중·환대의 공동체를 위한 조직문화 해설집
3. BIYN(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성폭력 사건처리 규정
4. 매듭 반성폭력 규약
5. 인권운동사랑방 성차별금지 및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내규
6. 단 하나의 기준, 적극적 합의
7. 공생의 조건 자료집

정기 회원총회에 참여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정기 회원총회

자료집 편집 및 디자인 | 오소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주소 | 서울 마포구 대흥로 20길 8 카리스장원빌딩 401호

이메일 | lgbtaction@gmail.com

전화 | 02-715-9984.